

- 2021년도 충청남도 -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행정문화위원회]

충 청 남 도

(공 동 체 지 원 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공동체 정책과	3
○ 사회적경제과	143
○ 청년정책과	203

< 특 별 회 계 >

○ 균형발전 특별회계	255
-------------------	-----

〈 일반회계 〉

공 동 체 정 책 과

공동체 정책 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추진	9
2. 공동체 활성화 홍보 추진	11
3. 시·군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13
4.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15
5.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17
6. 소통협력공간 조성	19
7.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21
8.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	23
9.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25
10.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27
11. Y-SMU 충남포럼새마을운동 육성	29
12. 실천적 새마을지도자 양성 지원사업	31
13. 충청남도 새마을회 운영	33
14. 새마을 생명살림운동 활성화 지원	35
15. 전국독서경진 충남대회 지원	37

16.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	39
17. 서산시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41
18. 아산시 새마을회관 등 기능 보강	43
19.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운영	45
20.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지원	47
21. 교통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지원	49
22.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	51
23. 충남통일관 운영	53
24.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지원	55
25.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57
26. 전국나라사랑스피치 충남대회 지원	59
27.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	61
28.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63
29. 국민운동단체 도지사 표창장(패) 제작 등	65
30. 행복한 공동체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67
31. 충남세종JC회원대회 지원	69
32.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71

33.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도센터)	73
3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	75
35.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77
36. 시군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79
37. 1+3 사랑나눔자원봉사 활동	81
38.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83
39.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85
40.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보강	87
41.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89
42.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91
43. 도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93
44.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95
45.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97
46.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99
47. 함께 걸어유 '둘레둘레 행복한 걷기'(도민참여) ..	101
48. 농촌지역 자치 요양마을 기반 구축 사업(도민참여) ...	103
49.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 공간조성 지원(도민참여) ...	105

50.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도민참여)	107
51. 메이커 마을공방 구축 사업	110
52. 만사형통 충남 운영	112
53.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114
54. 충남민관협치회의 운영	116
55.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118
56. 각종 민관협치 회의 등 참석자 실비	120
57.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122
58. 민관협치 관련 업무추진	124
59. 민관협치 활성화 업무추진	126
60. 공익활동 활성화 기반구축	128
61.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130
62.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시설관리운영)	132
63. 충남공감마루 시설지원(가구 등 제작 및 구입) ·	134
64.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36
65.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138
66. 공공갈등 관리 역량강화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 ·	140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추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관련 단체, 기관과의 협력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950천원
- 사 업 량 : 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및 공동체 관련 시군, 단체·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4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체 활성화 업무 추진 ○ 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및 교통실비 : 4회 × 5명 × 200천원 = 4,000천원 ○ 자문료, 감사비, 인쇄비 등 기타 운영비 : 1,950천원	
총사업비	5,950천원(도비 5,9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950		5,950	5,400	550		계속
국 비							
도 비	5,950		5,950	5,400	55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백기영 (행) 2272

공동체 활성화 홍보 추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개편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 신설 2년차를 맞아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로 도민 참여와 지원 확대
- 사업 위치 : 충청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90,000천원**
- 사 업 량 : 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 분야 주민 정책 및 지원(공모)사업 홍보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4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체 활성화 홍보 추진 ○ 일간지 보도 : 10회 × 6,000천원 = 60,000천원 ○ 온라인(SNS, 유튜브 등) 홍보 : 10회 × 3,000천원 = 30,000천원	
총사업비	90,000천원(도비 9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90,000		90,000	-	90,000		신규
국 비							
도 비	90,000		90,000	-	9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백기영 (행) 2272

시·군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개편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행정과 주민의 중간에서 연결 및 지원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와 분산설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통합운영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21,850천원
- 사 업 량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2개소, 통합지원센터 2개소, 현장코디네이터 6명(수요에 따른 조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공모를 통한 시군 선발, 3:7매칭)
- 사업시행주체 : 공모 선정 시군
- 사업 내용 :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739,500천원(도 221,850, 시군 517,650)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지원 : 400,000천원(도 120,000, 시군 280,000) - 시군별 200,000천원 × 2개 시군 = 400,000천원 ※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지원 : 200,000천원(도 60,000, 시군 140,000) - 시군별 100,000천원 × 2개 시군 = 200,000천원 ※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 139,500천원(도 41,850, 시군 97,650) - 지역코디네이터 육성비(인건비 포함) : 6명 × 7개월 × 2,200천원 = 92,400천원 - 지역공동체 융복합 사업비 : 7,850천원 × 6명 = 47,100천원	
총사업비	739,500천원(도비 221,850, 시군비 517,6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70,000		870,000	900,000	△30,000		계속
국 비							
도 비	261,000		261,000	270,000	△9,000		
시군비	609,000		609,000	630,000	△21,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용민 (행) 3474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에 정착하거나 지역에 도전하고픈 도시 청년들 유치, 청년들이 정착, 경험 공유를 통한 배움과 협업으로 자생하는 마을 조성
- 사업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사 업 량 :
 - 공간조성 :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통문화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양성공간 마련
 - 도시청년 한달살기 프로젝트 진행 : 연간 총 4회(1회 1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200,000천원(도 100,000, 시군 100,000) ○ 유휴공간 활용 공간조성 D.I.Y 지원 : 120,000천원(도 60,000, 시군 60,000) ○ 지역정착 프로그램 운영 : 80,000천원(도 40,000, 시군 40,000) - 1인 기준 2,000천원 × 프로그램 참여자 10명 × 분기별 1회(총4회) = 80,000천원 (교육비, 체험 활동비 포함)	
총사업비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0		200,000	-	-		신규
국 비							
도 비	100,000		100,000	-	-		
시군비	100,000		100,000	-	-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용민 (행) 3474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내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으로 재건축, 정부-시민 간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활력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10,000천원**(균특)
- 사 업 량 : 유휴공간 재건축(증축 또는 리모델링) 1식,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주민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증축 비용 지원
- 지원근거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균특사업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내용 :

-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여 정부-시민 간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로 지역활력 재고 및 지방소멸 대응
 - 지방의 소멸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활성화 공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여건 마련을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 1,020,000천원(균) ○ 당진시(403-01) = 1,000,000천원 - 주민자치회 주도 주민자치센터 창고 활용 주민참여 공간으로 재생 ○ 당진시(308-01) = 20,000천원 - 지역역량강화 조사연구 용역	
총사업비	1,020,000천원(국비/균특 510,000, 시군비 5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20,000		1,020,000	1,020,000	-		계속
국 비	510,000		510,000	510,000	-		균특
도 비							
시군비	510,000		510,000	510,000	-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10,000	51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용민 (행) 3474

소통협력공간 조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세부사업	소통협력공간 조성
	통 계 목	민간위탁금(307-05) 시설비(401-01) 연구용역비(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20.2월)>
- 사업 위치 : 중부농축산물류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
- 사업 기간 : 2020.1.1.~2022.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277,500천원**
- 사 업 량 : 소통협력 거점공간 조성(도시관리계획 변경, 건물 구조안전 진단 등),
 혁신활동 지원(사회문제해결실험 리빙랩, 홍보,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공간조성) 및 민간위탁(사회혁신센터-혁신활동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공간조성), 사회혁신센터(혁신활동지원-민간위탁)
- 사업 내용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2,277,500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307-05) 2,000,000 - 사회혁신활동 지원 프로그램(리빙랩, 홍보 등) 1,300,000 - 인건비 450,000 - 운영비(공과금 등) 250,000 ○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비(401-01) 150,000 - 건물 구조안전진단 등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207-01) 127,500	
총사업비	2,277,500천원(국비 2,000,000, 도비 277,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3,000,000	2,000,000	2,277,500	-	2,277,500	8,722,500	계속('20~'22)
국 비	6,000,000	2,00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국고
도 비	7,000,000		277,500	-	277,500	6,722,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87.8%, 도비 12.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승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2020. 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병철 (행) 3471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도의새마을 교육 지원
	통 계 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올바른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참다운 지역인재 양성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5,000천원
- 사 업 량 : 2,2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문교육기관(새마을중앙연수원, 논산 상상마당) 위탁교육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 2021년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시·군 지원내역								
	시군명	사업비	시군명	사업비	시군명	사업비	시군명	사업비	
	총 계				283,333				
	천안시	10,133	서산시	13,896	금산군	21,655	홍성군	20,499	
	공주시	17,266	논산시	49,691	부여군	16,748	예산군	21,153	
	보령시	23,220	계룡시	4,309	서천군	17,713	태안군	13,760	
	아산시	14,202	당진시	17,703	청양군	21,386			
	총사업비	283,333천원(도비 85,000, 시·군비 198,33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83,333		283,333	408,997	△125,664		계속
국 비							
도 비	85,000		85,000	122,699	△37,699		
시군비	198,333		198,333	286,298	△87,965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128,250	120,000	8,250	93.5%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충남 인성교육 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생, 청소년, 일반인 등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7,813천원
- 사 업 량 : 13개 시군(※ 계룡·당진 미참여)
- 사업시행방법 : 민간(공모사업)
- 사업시행주체 : 도내 시민단체
- 사업 내용 : 충·효·예·나눔·배려 등 핵심가치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배양
- 지원 근거 : 인성교육법 제11조,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인성교육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인성교육 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시·군 공모사업) ○ 2021년 충남 인성교육 지원 시·군 지원내역								
	시군명		사업비		시군명		사업비		
	총 계				157,293				
	천안시	16,000	서산시	8,000	금산군	4,800	홍성군	32,000	
	공주시	20,000	논산시	4,800	부여군	9,600	예산군	12,000	
	보령시	7,200	계룡시	-	서천군	12,000	태안군	5,600	
	아산시	13,200	당진시	-	청양군	11,200	도유보	893	
총사업비	157,293(도비 47,813 시·군비 109,4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57,293		157,293	187,500	△30,207		계속
국 비							
도 비	47,813		47,813	56,250	△8,437		
시군비	109,480		109,480	131,250	△21,77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8,650	56,336	0	96%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여 유공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73,925천원
- 사 업 량 : 18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15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대학생: 지역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2021년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시·군 지원내역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총 계				245,005				
	천안시	74,100	서산시	16,900	금산군	10,400	홍성군	10,400	
	공주시	20,800	논산시	16,900	부여군	5,200	예산군	6,500	
	보령시	15,600	계룡시	5,200	서천군	15,600	태안군	6,500	
	아산시	15,600	당진시	16,900	청양군	7,800	도유보	605	
	총사업비	245,005천원(도비 73,925 시군비 171,0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45,005		245,005	253,200	△8,195		계속
국 비							
도 비	73,925		73,925	126,600	△52,675		
시군비	171,080		171,080	126,600	△44,48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2,100	96,114	35,986	73%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새마을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000천원
- 사 업 량 : 6개 시군 지회(최우수 지회-1개, 우수 지회-5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새마을회
- 사업 내용 : 시군 새마을회 역점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군 새마을회에 인센티브 지급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 우수 시군 시상금(총 6개 시군) : 8,000천원 · 2,000천원 x 1개 시군 = 2,000천원 · 1,200천원 x 5개 시군 = 6,000천원	
총사업비	8,000천원(도비 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000		8,000	9,000	△1,000		계속
국 비							
도 비	8,000		8,000	9,000	△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5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Y-SMU 충남포럼새마을운동 육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 새마을운동 확산을 통한 제2새마을운동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새마을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8,720천원
- 사 업 량 : 1,500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새마을회
- 사업 내용 : Y-SMU 충남포럼, 시군임원 간담회, 방과 후 학교·집 고쳐주기 등 봉사활동 추진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Y-SMU 충남포럼 새마을운동 육성 ○ Y-SMU 포럼 봉사활동 현수막 제작 : 500천원 · 100천원 × 5개 = 500천원 ○ Y-SMU 포럼 재능봉사 재료비 : 18,220천원 · {(인쇄비) 900천원 × 1} + {(집수리 재료) 9,000천원 × 1} + {(벽화 재료) 5,500천원 × 1} + {(장수사진 재료) 2,820천원 × 1}	
총사업비	18,720천원(도비 18,7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8,720		18,720	21,060	△2,340		계속
국 비							
도 비	18,720		18,720	21,060	△2,34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3,400	23,4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실천적 새마을지도자 양성 지원사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실천적 새마을지도자 양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새마을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0,200천원
- 사 업 량 : 3회(안전지킴이, 지도자, 문고·직공장 워크숍 각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새마을회(지도자, 문고, 직공장)
- 사업 내용 : 해당 분야별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실천적 새마을지도자 양성 지원사업 ○ 교육 및 워크숍 재료비(시상품) : 4,000천원 · {(안전스티커) 500원 × 6,000장} + {(방법센서) 10,000원 × 10개 × 10조} ○ 교육 및 워크숍 식비(간식비) : 1,700천원 · (7천원 × 100명 × 2회) + (3천원 × 100명 × 1회) ○ 교육 및 워크숍 인쇄비 및 강사료 : 3,300천원 · {(책자) 5천원 × 100명 × 3회} + {(현수막) 1,000천원 × 1식} + {(강사료) 800천원 × 1식} ○ 교육 및 워크숍 장소 및 장비 임차료 : 1,200천원 · 1,200천원 × 1식 = 1,200천원	
총사업비	10,200천원(도비 10,2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200		10,200	11,000	△800		계속
국 비							
도 비	10,200		10,200	11,000	△8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000	14,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충청남도 새마을회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새마을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0,000천원
- 사 업 량 : 충청남도 새마을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새마을회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새마을회 지원을 통한 충남 새마을운동 활성화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새마을회 운영 : 50,000천원 ○ 행정인력 인건비 : 45,875천원 · 사무요원 봉급 1,796천원 × 12월 = 21,552천원 · 사무처장 직책수당 300천원×12월 = 3,600천원 · 부장(2) 직책수당 150천원×2명×12월 = 3,600천원 · 사무처장, 부장(2) 중식비 170천원×3명×12월 = 6,120천원 · 사무처장, 부장(2) 연가보상비 = 11,003천원 ○ 사무용품비 : 4,125천원 · 일반사무용품 32.5천원 × 10회 = 325천원 · 복사용지(A4) 25천원 × 20박스 = 500천원 · 상장표지 4천원 × 200매 = 800천원 · 정기총회, 이사회 자료제작 10천원 × 300부 = 1,500천원 ·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200천원 × 5회 = 1,000천원	
총사업비	50,000천원(도비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0,000		50,000	50,000	-		계속
국 비							
도 비	50,000		50,000	50,0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새마을 생명살림운동 활성화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단결을 통한 제2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새마을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5,000천원
- 사 업 량 : 새마을운동 도 촉진대회(1회), 새마을운동 전국대회(1회), 3R 자원모으기 경진대회(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새마을회
- 사업 내용 : 각종 새마을운동 행사 개최 및 참가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새마을 생명살림운동 활성화 지원 ○ 새마을운동 도 촉진대회 : 18,000천원 · {(장비 임대료) 7,000천원 + (행사준비) 7,000천원 + (인쇄비) 3,000천원 + (진행요원 등 인건비) 1,000천원} ○ 전국대회 참가 : 6,000천원 · {(숙박비) 3,600천원 + (버스임차) 1,500천원 + (식비) 900천원} ○ 3R 자원모으기 경진대회 : 21,000천원 · {(재료비) 18,000천원 + (시상금) 3,000천원}	
총사업비	45,000천원(도비 4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5,000		45,000	45,000	-		계속
국 비							
도 비	45,000		45,000	45,0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7,000	47,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전국독서경진 충남대회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독서문화 확산 및 주민자율형 독서문화운동조직 육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새마을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600천원
- 사 업 량 : 100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새마을문고협의회
- 사업 내용 : 충남 초·중고 학생들 대상 독서경진대회 개최 및 전국독서경진 대회 참석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독서경진대회 ○ 부상품 : 2,000천원 · 10천원 × 200장 = 2,000천원 ○ 운영부문 시상 : 700천원 · 700천원 × 1식 = 700천원 ○ 인쇄비 : 2,150천원 · {(상장) 1,100천원 + (팜플렛, 현수막) 1,050천원} = 2,150천원 ○ 심사수당 : 750천원 · 3명 × 250천원 = 750천원	
총사업비	5,600천원(도비 5,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600		5,600	6,300	△700		계속
국 비							
도 비	5,600		5,600	6,300	△7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7,000	7,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르신 공경 사회분위기 조성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새마을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4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1,700천원
- 사 업 량 : 7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 사업 내용 : 새마을봉사대 고부 한마음 대행진, 새마을 여인상 시상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 새마을봉사대 고부 한마음대행진 : 8,000천원 · {(장비) 3,000천원 + (현수막, 표창 등) 3,000천원 + (시상품) 1,000천원 + (간식) 1,000천원} ○ 새마을여인상 : 3,700천원 · {(상패) 1,500천원 + (상품) 2,200천원}	
총사업비	11,700천원(도비 11,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1,700		11,700	11,700	-		계속
국 비							
도 비	11,700		11,700	11,7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000	13,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서산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산시새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를 통한 거점 공익공간 활성화
- 사업 위치 : 서산시새마을회관(서산시 읍지7로 7)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65,000천원
- 사 업 량 : 1식(서산시 새마을회관 옥상 등 방수공사)
- 사업시행방법 : 시군대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서산시새마을회
- 사업 내용 : 옥상 방수공사(우레탄도막), 창호 실리콘 공사, 외벽 보수공사(스콘코트 시공)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서산시 새마을회 옥상 및 외벽누수 보수공사 ○ 실시설계용역비 : 6,770천원 ○ 새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 : 52,400천원 - 방수공사 재료비 : 10,034천원 - 방수공사 직접·간접노무비 등 : 37,417천원 - 기계장비 경비 : 4,949천원 ○ 새마을회관 외벽 누수공사 : 70,830천원 - 외벽보수공사 재료비 : 35,089천원 - 외벽보수공사 직접노무비 등 : 32,990천원 - 기계장비 경비 : 2,751천원	
총사업비	130,000천원(도비 65,000, 시비 6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30,000		130,000	-	130,000		신규
국 비							
도 비	65,000		65,000	-	65,000		
시군비	65,000		65,000	-	6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아산시 새마을회관 등 기능 보강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자립기반 조성 마련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5,000천원
- 사 업 량 : 1식(아산시 새마을회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아산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아산협의회
- 사업 내용 : 아산시 새마을회관 등 기능 보강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아산시 새마을회 기능보강 사업 ○ 방수공사 1식 : 10,120천원 ○ 내부 페인트 공사 1식 : 2,600천원 ○ 누전수리 및 LED 전등 교체 공사 1식 : 1,280천원 ■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 협의회 홍보판 공사 ○ 홍보판 공사 1식 : 10,000천원 ■ 아산시 온양5동 새마을 협의회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공사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1식 : 6,000천원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0,000		30,000	-	30,000		신규
국 비							
도 비	15,000		15,000	-	15,000		
시군비	15,000		15,000	-	1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도내 생활안전망 구축
- 사업 위치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별관 203호)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5,000천원
- 사 업 량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운영(직원 : 2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사업 내용 :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토대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개
- 지원 근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운영 ○ 인건비 : 51,600천원 · {(처장)12월×2,300천원} + {(국장)12월×2,000천원} ○ 사무용품비 : 1,600천원 · 133천원 × 12회 ≒ 1,600천원 ○ 제세공과금 : 1,800천원 · (우편료, 관리비 등) 150천원 × 12회 = 1,800천원	
총사업비	55,000천원(도비 5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5,000		55,000	55,000	-		계속
국 비							
도 비	55,000		55,000	55,0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개최 및 참가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사업 위치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별관 203호)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88,000천원
- 사 업 량 : 2식(바르게살기운동 도 전진대회·전국대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사업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도 전진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
- 지원 근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 바르게살기운동 도 전진대회 : 13,000천원 · {(기념품) 5천원 × 800개} + {(인쇄비) 5천원 × 700부} + {(표창장) 20천원 × 65개} + {(차량비) 300천원 × 14대} ○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 : 275,000천원 · {(무대설치비) 50,000천원}+{(운영시스템) 29,000천원}+{(홍보비) 36,000천원}+{(행사안내 설치물) 18,000천원}+{(일반수용비(기념품)) 50,000천원}+{(인쇄비) 20,000천원}+{(사회자진행비) 4,000천원}+{(회의비)) 12,000천원}+{(회원피복비) 15,000천원}+{(LED스크린비) 12,000천원}+{(영상물제작비) 9,000천원}+{(인건비 및 식대) 11,000천원}+{(제비용) 9,000천원}}	
총사업비	288,000천원(도비 28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88,000		288,000	312,000	△24,000		계속
국 비							
도 비	288,000		288,000	312,000	△2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8,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교통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운동을 통한 도내 교통안전문화 확산
- 사업 위치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별관 203호)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645천원
- 사 업 량 : 2,0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도 및 시·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사업 내용 :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 및 캠페인 실시 등
- 지원 근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인쇄 및 제작비 : 2,945천원 · {(전단지) 60원 × 8,000부} + {(현수막) 50천원 × 40개} + {(어깨띠) 3천원 × 130개} + {(배너) 35천원 × 2개} ○ 강사수당 : 300천원 · 150천원 × 2회 = 300천원 ○ 대관료 : 400천원 · 200천원 × 1실 × 2회 = 400천원	
총사업비	3,645천원(도비 3,64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645	0	3,645	4,050	△405		계속
국 비							
도 비	3,645	0	3,645	4,050	△40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5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통일관 및 안보관 확립
- 사업 위치 : 충남통일관(충남 공주시 무령로 128)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6,120천원**
- 사 업 량 : 민주시민교육 40회 2,000여명 / 안보현장 견학 6회 2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사업 내용 :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안보현장견학 실시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 강사료 : 1,600천원 · 16명 × 100천원 = 1,600천원 ○ 교재 인쇄비(통일관 및 학교 등 비치) : 1,200천원 · 4천원 × 300부 = 1,200천원 ○ 사무용품 등 구입 : 120천원 · 120천원 × 1식 = 120천원 ■ 안보현장 견학 ○ 수송차량 임차료 : 3,000천원 · 500천원 × 6대 = 3,000천원 ○ 현수막 제작 : 100천원 · 50천원 × 2매 = 100천원 ○ 여행자보험 가입 등 : 100천원 · 100천원 × 1식 = 100천원	
총사업비	6,120천원(도비 6,1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120		6,120	8,100	△1,980		계속
국 비							
도 비	6,120		6,120	8,100	△1,98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9,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충남통일관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통일관 운영 지원을 통한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 사업 위치 : 충남통일관(충남 공주시 무령로 128)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85,000천원
- 사 업 량 : 충남통일관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사업 내용 : 충남통일관 운영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통일관 운영 ○ 인건비(4명) : 157,800천원 · {(봉급) 11,380천원 × 12월} + {(보형료) 1,200천원 × 12월} + {(명절휴가비) 3,420천원 × 2회}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10,800천원 · 900천원 × 12월 = 10,800천원 ○ 시설 유지·관리 : 15,000천원 · 1,250천원 × 12회 = 15,000천원 ○ 인쇄·사무용품비 : 1,400천원 · 1,400천원 × 1식 = 1,400천원	
총사업비	185,000천원(도비 18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85,000		185,000	185,000	-		계속
국 비							
도 비	185,000		185,000	185,0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0,000	17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회원 상호 간의 일체감 조성
- 사업 위치 : 충남통일관(충남 공주시 무령로 128)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100천원**
- 사 업 량 : 1,0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사업 내용 : 도내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행사 실시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지원 ○ 수송비 : 5,600천원 · 14대 × 400천원 = 5,600천원 ○ 인쇄비(현수막 등) : 400천원 · 400천원 × 1회 = 400천원 ○ 시설 대관료 : 2,100천원 · 2,100천원 × 1회 = 2,100천원	
총사업비	8,100천원(도비 8,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100		8,100	8,100	-		계속
국 비							
도 비	8,100		8,100	8,1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9,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도민들의 애국심 고취
- 사업 위치 : 충남통일관(충남 공주시 무령로 128)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040천원
- 사 업 량 : 15회(시군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사업 내용 :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행사 실시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 지원금 : 8,040천원 · 536천원 × 15개 시군 지회 = 8,040천원	
총사업비	8,040천원(도비 8,04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040	0	8,040	9,720	△1,680		계속
국 비							
도 비	8,040	0	8,040	9,720	△1,68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800	10,8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전국나라사랑스피치 충남대회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나라사랑스피치 대회 실시를 통한 도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보관·통일관 확립
- 사업 위치 : 충남통일관(충남 공주시 무령로 128)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215천원
- 사 업 량 : 1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사업 내용 : 충남 초·중고 학생들 대상 스피치대회 개최 및 전국 스피치대회 참석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나라사랑스피치 충남대회 지원 ○ 트로피 제작 및 포상금 : 415천원 · 365천원 × 1식(트로피 제작) = 365천원 · 50천원 × 1명(지도교사상) = 5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800천원 · 200천원 × 4명 = 800천원	
총사업비	1,215천원(도비 1,21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15		1,215	1,215	-		계속
국 비							
도 비	1,215		1,215	1,215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50	1,35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북한문화 전파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새터민 사회적응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통일관(충남 공주시 무령로 128)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0,000천원
- 사 업 량 : 4회(초청공연)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사업 내용 : 지역축제 시 평양민속예술공연단 공연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 ○ 공연비 : 10,000천원 · 2,500천원 × 4회 = 10,000천원	
총사업비	10,000천원(도비 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00		10,000	10,206	△206		계속
국 비							
도 비	10,000		10,000	10,206	△206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340	11,34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성균관유도회 단체 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청소년들에게 성년례를 통하여 효와 예를 중시하는 문화 조성
- 사업 위치 :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70)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000천원
- 사 업 량 : 4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
- 사업 내용 : 성년례(관례, 계례, 집체성년례) 의식행사
- 지원 근거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 인쇄 및 제작비 : 3,000천원 · {(홍보물) 4천원 × 500부} + {(현수막) 200천원 × 2회} + {(케이스) 3천원 × 200매} ○ 인건비 : 1,000천원 · 50천원 × 5명 × 4일 = 1,000천원	
총사업비	4,000천원(도비 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000		4,000	3,600	400		계속
국 비							
도 비	4,000		4,000	3,600	4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00	3,6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국민운동단체 도지사 표창장(패) 제작 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사회단체 육성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도민 및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로 자긍심 고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355천원
- 사 업 량 : 162여명
- 사업시행방법 : 자체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새마을, 자유총, 바르게,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도민 및 공무원 표창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충청남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단체 및 충청남도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도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도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민운동단체 도지사 표창장(패) 제작 ○ 표창장 제작 : 3,000천원 · 20천원 × 150개 = 3,000천원 ○ 표창패 제작 : 2,355천원 · 200천원 × 12개 ≒ 2,355천원	
총사업비	5,355천원(도비 5,35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355		5,355	6,300	△945		계속
국 비							
도 비	5,355		5,355	6,300	△94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300	5,574	0	88.4%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행복한 공동체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사회단체 육성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홀몸노인 맞춤형 밀착서비스 지원을 통한 홀몸노인 우울증·자살 예방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8,000천원
- 사 업 량 : 도내 홀몸노인 2,000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새마을봉사대)
- 사업 내용 : 새마을봉사대와 홀몸노인이 1:1결연을 맺고 집안청소, 반찬나눔 등의 봉사활동 정례적 수행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9조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9조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 영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3. 기타 도지사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행복한 공동체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 청소용품 : 9,000천원 · 50천원 × 15시군 × 12회 = 9,000천원 ○ 반찬재료비 : 9,000천원 · 50천원 × 15시군 × 12회 = 9,000천원	
총사업비	18,000천원(도비 1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8,000		18,000	18,000	-		계속
국 비							
도 비	18,000		18,000	18,0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1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충남세종JC 회원대회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사회단체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충남대회개최를 통한 홍성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 위치 : 홍성 홍주종합경기장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0,000천원
- 사 업 량 : 10,000여명(충남세종JC 회원 및 가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충남세종 청년회의소(JC)
- 사업 내용 : 홍성군민 문화대축제 및 제51차 충남세종지구JC 회원대회
- 지원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 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세종JC 회원대회 지원 ○ 본부 집행비 : 12,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비 : 3,600천원 - 우편비(공문발송 및 우편물 발송 등) : 3,600천원 - 대회유치 준비비(계획서 인쇄비, 홍보비 등) : 4,800천원 ○ 홍보 및 기획 : 27,000천원 - 지역가수 섭외비, 팸플렛, 포스터, 의전용품 인쇄비, 신문광고 및 방송홍보비 등 ○ 본대회 준비 : 21,000천원 - 특수효과 및 대회 무대 설치(70평, 백드롭 포함) : 21,000천원	
총사업비	60,000천원(도비 30,000, 군비 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0,000		60,000	-	60,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		30,000	-	30,000		
시군비	30,000		30,000	-	3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 (시군경상/보험료)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경제적 담보제공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확산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66,004천원**
- 사 업 량 : 자원봉사 활동인 19만여 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지원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모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 ○ 2017~2020년 자원봉사 4년간 평균 실인원 192천명(전국 약 4.84% 점유) - 국비 총예산액 1,364,000천원×약 4.84%	
총 사업비	132,008천원(국비 66,004천원, 시·군비 66,00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32,008		132,008	130,684	1,324		계속
국 비	66,004		66,004	65,342	662		국고
도 비							
시군비	66,004		66,004	65,342	662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3,853	63,853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도센터)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도/코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8,728천원
- 사 업 량 : 3명(교육 1, 전산 1, 재난 1) ※ 행정안전부 재난 코디네이터 2021년 신규 배정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코디네이터 기본급, 퇴직금, 복지포인트,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도센터) ○ 기본급 : 1,823천원×3명×12월 = 65,628천원 ○ 퇴직금 : 2,349천원×3명×1월 = 7,089천원 ○ 4대 보험료 : 2,157천원×3명 = 6,471천원 ○ 복지포인트 : 500천원×3명 = 1,500천원 ○ 상여금(명절휴가비) : 1,000천원×3명 = 3,000천원 ○ 정액급식비 : 140천원×3명×12월 = 5,040천원	
총 사업비	88,728천원(국비 44,364천원, 도비 44,36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8,728		88,728	58,124	30,604		계속
국 비	44,364		44,364	29,062	15,302		국고
도 비	44,364		44,364	29,062	15,302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250	55,25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자원봉사활성화지원(시군경상/코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43,636천원
- 사 업 량 : 30명(15개 자원봉사센터 / 교육 1명, 전산 1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코디네이터 기본급, 퇴직금, 복지포인트,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 기본급 : 1,823천원×30명×12월 = 656,280천원 ○ 퇴직금 : 2,349천원×30명×1월 = 70,882천원 ○ 4대 보험료 : 2,157천원×30명 = 64,710천원 ○ 복지포인트 : 500천원×30명 = 15,000천원 ○ 상여금(명절휴가비) : 1,000천원×30명=30,000천원 ○ 정액급식비 : 140천원×30명×12월=50,400천원	
총 사업비	887,272천원(국비 443,636천원, 시군비 443,63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87,272		887,272	871,876	15,396		계속
국 비	443,636		443,636	435,938	7,698		국고
도 비							
시군비	443,636		443,636	435,938	7,698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14,375	414,375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87%) = 1,255,212천원 · 기본운영경비[20%]+상근인원 인건비[15%]+주민등록인구율[10%]+인구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10%]+등록대비 자원봉사 활동률(실인원)[45%] ○ 처우개선비(8%) = 114,308천원 · 3년 미만 = 80,000원 × 12월 · 3년 이상~5년 미만 = 100,000원 × 12월 · 5년 이상 = 120,000원 × 12월 ○ 재난재해봉사단 운영비(5%) = 72,080천원 · 15개 시·군 × 4,805천원	
총 사업비	1,441,600천원(도비 360,400천원, 시·군비 1,081,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441,600		1,441,600	1,696,000	△254,400		계속
국 비							
도 비	360,400		360,400	424,000	△63,600		
시군비	1,081,200		1,081,200	1,272,000	△190,8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14,000	411,000	3,000	99.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시군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460천원**
- 사 업 량 : 시군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중 월 급여 생활임금 미만인 자(약 47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월 급여 2,130천원(2021년 생활임금) 미만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처우개선비 50천원 지급
- 지원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 ②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도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종사자(약 64명) 중 월급여 2,130천원(2021년 생활임금) 미만이고 1년 이상 종사자(약 47명) - 47명 × 50천원 × 12개월 = 28,200천원 ※ 예산액과 사업대상 현황은 2020년 기초자료에 의한 추정치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총 사업비	28,200천원(도비 8,460, 시·군비 19,7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8,200		28,200	23,400	4,800		계속
국 비							
도 비	8,460		8,460	7,020	1,440		
시군비	19,740		19,740	16,380	3,36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활동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랑나눔봉사단 운영을 통한 어려운 이웃돕기, 지역축제 지원,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 등 읍면동 지역단위 자원봉사활동 전개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6,000천원**
- 사 업 량 :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1+3사랑나눔봉사단 자원봉사활동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활동 ○ 8,000천원 × 15개 시·군 = 120,000천원	
총 사업비	120,000천원(도비 36,000천원, 시·군비 8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0,000		120,000	123,500	△3,500		계속
국 비							
도 비	36,000		36,000	37,050	△1,050		
시군비	84,000		84,000	86,450	△2,45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5,000	6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읍면동 자원봉사 수요-공급 효율적 관리 등 생활권중심 자원봉사 확산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13,038천원**
- 사 업 량 : 읍면동 자원봉사 캠프 14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 거점캠프 상담가 실비 보상 : 669,660천원 - 450천원 × 144개소 × 10.3개월 ○ 거점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 370,800천원 - 250천원 × 144개소 × 10.3개월 ○ 신규 거점캠프 설치비 지원(컴퓨터 등 집기류 구입비) : 3,000천원 - 1,500천원 × 2개소	
총 사업비	1,043,460천원(도비 313,038천원, 시·군비 730,42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43,460		1,043,460	1,230,510	△187,050		계속
국 비							
도 비	313,038		313,038	369,153	△56,115		
시군비	730,422		730,422	861,357	△130,935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15,254	615,254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풀뿌리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 고충해결 및 주민 정서유대 강화, 주민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90,043천원
- 사 업 량 : 2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 기본급 : 1,823천원×22명×12월 = 481,272천원 ○ 퇴직금 : 1,581천원×22명×1월 = 34,791천원 ○ 4대 보험료 : 2,157천원×22명 = 47,454천원 ○ 상여금(명절휴가비) : 1,000천원×22명 = 22,000천원 ○ 복지포인트 : 500천원×22명 = 11,000천원 ○ 정액급식비 : 140천원×22명×12월 = 36,960천원	
총 사업비	633,477천원(도비 190,043천원, 시군비 443,43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33,477		633,477	667,806	△34,329		계속
국 비							
도 비	190,043		190,043	200,342	△10,299		
시군비	443,434		443,434	467,464	△24,03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8,139	208,139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보장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 보강[(사)홍성군청년회 기능보강] ○ 사무실 집기류 및 교육용 컴퓨터 : 15,000천원 - 테이블(소) 사무용 300천원×4개=1,200천원 - 테이블(대) 사무용 200천원×1개=200천원 - 의자 사무용 100천원×16개=1,600천원 - 컴퓨터 1,500천원×8대=12,000천원 ○ 청년생산 지역특산품 및 청년제작 상품 홍보전시 : 3,500천원 - 진열장 및 수납장 3,500천원×1세트=3,500천원 ○ 무료 쉼터카페 조성 : 5,500천원 - 제빙기 1,400천원×1대=1,400천원 - 냉온정수기 1,100 천원×1대=1,100천원 - 커피머신 3,000천원×1대=3,000천원	
총 사업비	24,000천원(도비 12,000천원, 군비 1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4,000		24,000		24,000		신규
국 비							
도 비	12,000		12,000		12,000		
시군비	12,000		12,000		12,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네트워크 구축 등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16,277천원**
- 사 업 량 : 4개 분야(①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②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③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④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 63,492 -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 36,900 - 특수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 19,276 -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홍보 강화 : 7,316 ○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 44,610 - 유관섹터 간 협력체계 구축 : 38,610 - 자원봉사 포털 서비스 고도화 : 6,000 ○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 83,175 - 교육 실행체계 강화 : 20,654 - 자원봉사 인정방식 다양화 : 37,251 - 수요처 범위 확장 및 관리 강화 : 2,970 - 지역특화 혁신 프로그램 지원 : 22,300 ○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 25,000	
총 사업비	216,277천원(도비 216,27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16,277		216,277	254,444	△38,167		계속
국 비							
도 비	216,277		216,277	254,444	△38,167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2,715	212,715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융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17,466천원**
- 사 업 량 : 정규인력 6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 인건비 : 409,735원 · 기본급 : 258,929천원 - 센터장 : 69,120 / 사무국장 56,363 / 팀장(2) : 86,788 / 팀원(2) : 46,658 · 수당 : 41,353천원 - 가족수당 4,320 / 정근수당 13,001 / 정근수당 가산금 2,980 / 시간외수당 21,052 · 정액급식비 : 10,080천원 · 명절휴가비 : 18,967천원 · 연가보상비 : 5,450천원 · 처우개선비 : 3,360천원 · 법정총당금 : 71,596천원 ○ 물건비 : 102,631천원 · 일반운영비 : 57,411천원	

	· 여 비 : 21,400천원 · 업무추진비 : 8,820천원 · 직급보조비 : 15,000천원 ○ 자산취득비 : 5,100천원(열화상카메라, PC(1대), 책상, 의자 등 구입)	
총 사업비	517,466천원(도비 517,46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17,466		517,466	517,466	-		계속
국 비							
도 비	517,466		517,466	517,466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3,817	453,817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도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200천원
- 사 업 량 : 도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중 월 급여 생활임금 미만인 자(약 2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월 급여 2,130천원(2021년 생활임금) 미만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처우개선비 50천원 지급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종사자 중 월급여 2,130천원(2021년 생활임금) 미만이고 1년 이상 종사자(2명) - 2명 × 50천원 × 12개월 = 1,200천원	
총사업비	1,200천원(도비 1,2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00		1,200	1,200	-		계속
국 비							
도 비	1,200		1,200	1,2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민간경상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주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충남형 공동체 가치 확산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
- 예 산 액 : **34,000천원**
- 사 업 량 :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중간지원 조직 위탁 운영(공모선정)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정책과 변화 등을 통합 인지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공무원(도 및 시·군) 대상 : 공동체 정책흐름 및 융복합 필요성 등 교육
 - 중간지원조직(도 및 시·군) 대상 : 영역별 공동체 정책 학습 및 조직원 역량강화 교육
 - 공동체 사업 마을특성 맞춤형 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 역점과제 ⑦ 사회통합을 위한 충남형 공동체 육성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도비)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3,000천원(1,500천원 × 2회)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통합 워크숍(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등) 2회 : 5,000천원 - 공동체 중간 및 최종 성과 공유회 2회 : 4,000천원 - 공동체별 사전 멘토 및 컨설팅 진행 등 : 20,000천원(300천원 × 2회 × 1명 × 30개) - 강사비, 교재인쇄비, 다과비 등 : 2,000천원	
총사업비	34,000천원(도비 3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34,000		34,000	45,000	△11,000		계속
국 비							
도 비	34,000		34,000	45,000	△1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44,984	16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읍면동 단위 소규모 공동체 활동지원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2,840천원
- 사 업 량 : 30개 공동체
- 사업시행방법 : 도에서 공모로 대상 공동체 선정, 시군을 통해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
 - 공동육아, 마을텃밭 가꾸기,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 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 역점과제 :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30개 읍면동 선정 : 선정공동체별 5,000천원 ~ 20,000천원	
총사업비	142,800천원(도비 42,840, 시군비 99,96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42,800		142,800	240,000	△97,200		계속
국 비							
도 비	42,840		42,840	72,000	△29,160		
시군비	99,960		99,960	168,000	△68,04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00	6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마을과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32,090천원**
- 사 업 량 : 7개 시·군 ※ 전년도 : 7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실무협의회 운영, 마을강사 양성, 주민주도형 마을학교 운영 등
시군 지역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역점과제 :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시군 공모 추진 : 시군당 18,000천원 ~ 60,000천원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실무협의회 운영 - 마을 강사 양성 및 자치학교 운영 - 주민아카데미, 주민대상 마을학교,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사업비	440,300천원(도비 132,090, 시군비 308,21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40,300		440,300	740,000	△299,700		계속
국 비							
도 비	132,090		132,090	222,000	△89,910		
시군비	308,210		308,210	518,000	△209,79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30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함께 걸어요 ‘둘레둘레 행복한 걷기’ (도민참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연과 함께하는 걷기를 통해 보행약자(어르신) 건강증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3,600천원
- 사 업 량 : 충청남도 내 만 65세 이상 노인
- 사업시행방법 : 도에서 공모를 통한 시군 선정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걷기운동 활성화로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계획)

- ① 도지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4.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함께 걸어요 ‘둘레둘레 행복한 걷기’ : 67,200천원 * 각 시군별 22,400천원 소요 ○ 충남도내 둘레길 걷기 - 식비 : 8천원 x 2식 x 50명 x 8회 x 3개 시군 = 19,200천원 - 차량 임차료 : 700천원 x 8회 x 3개 시군 = 16,800천원 - 여행자 보험 : 10천원 x 50명 x 8회 x 3개 시군 = 12,000천원 - 강사료 : 50천원 x 8시간 x 2명 x 8회 x 3개 시군 = 19,200천원	
총사업비	67,200천원(도비 33,600, 시군비 33,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67,200	-	67,200	-	67,200		신규
국 비							
도 비	33,600	-	33,600	-	33,600		
시군비	33,600	-	33,600	-	33,6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농촌지역 자치 요양마을 기반 구축 사업 (도민참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자치요양마을 구축으로 복지수요 자체 해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 위치 : 예산군 일원(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266, 267)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50,000천원
- 사 업 량 : 예산군 일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을 통해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마을주민 활동공간 조성(시산리 아리랑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세시풍속, 취미교실, 공동요양사업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역점과제 :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지역 자치 요양마을 기반 구축 사업 : 500,000천원 ○ 아리랑커뮤니티센터 조성 - 가족간, 세대간 상호 커뮤니티 공간 조성 = 250,000천원 ○ 아리랑 나눔 사업 - 음식나눔, 문화나눔, 사랑나눔 사업 = 50,000천원 ○ 아리랑 에코 뮤지엄 사업 및 아리랑 홍보 사업 - 아리랑 에코 뮤지엄 리모델링, 텃밭 조성 등 = 200,000천원	
총사업비	500,000천원(도비 250,000, 시군비 2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500,000	-	500,000	-	500,000		신규
국 비							
도 비	250,000	-	250,000	-	250,000		
시군비	250,000	-	250,000	-	25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 공간 조성 지원 (도민참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확산을 위해 부족한 활동 공간 지원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0,000천원
- 사 업 량 : 5개소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마을교육공동체 공간 지원(시 명의로 공간 임차)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
 - 지역여건상 유휴공간이 없어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거나 기존 교육공동체 중 민간건물을 유료 임차하여 사용하는 단체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 역점과제 :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공간 임차료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20,000천원 × 5개소 : 100,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00,000	-	100,000	-	100,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0	-	50,000	-	50,000		
시군비	50,000	-	50,000	-	5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도민참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74,405천원
- 사 업 량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10건
- 사업시행방법 : 도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사업 소관 시군을 통해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마을 텃밭 가꾸기, 벼룩시장, 작은도서관 운영 등 모임·단체 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 역점과제 :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 148,810천원(도비 74,405, 시군비 74,405) ○ 소쿠리 반찬나눔 사업 : 10,000천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 재료비, 기타 소모품비 등 = 10,000천원 ○ 온 마을 텃밭 인문학 교실 : 20,000천원(도비 10,000, 시군비 10,000) - 재료비, 강사비, 인쇄비 등 : 20,000천원 ○ 고추장 담그기 재능기부 및 독거노인 나눔행사 : 20,000천원(도비 10,000, 시군비 10,000) - 재료비, 강사비, 홍보비 등 : 20,000천원 ○ 더 좋은 지역공동체 Upcycling 공예마을 : 20,000천원(도비 10,000, 시군비 10,000) - 재료비, 강사비, 기타 소모품비 등 : 20,000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 앞마당 베타시장 : 2,310천원(도비 1,155, 시군비 1,155) - 천막, 음향 임차비, 재료비, 기타 소모품비 등 : 2,310천원 ○ 세대통합으로 이웃간을 연결해요 : 20,000천원(도비 10,000, 시군비 10,000) - 10개소 × 2회 × 1,000천원 = 20,000천원 ○ 성성동 마을공동체를 기록하다 : 6,500천원(도비 3,250, 시군비 3,250) - 재료비, 강사비, 기타 소모품비 등 : 6,500천원 ○ 밭 작물 재배하여 드림 : 10,000천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 임차비, 재료비, 강사비 등 : 10,000천원 ○ 동병 마을학교 : 20,000천원(도비 10,000, 시군비 10,000) - 재료비, 강사비, 기타 소모품비 등 : 20,000천원 ○ 아낙네들 나누미 : 20,000천원(도비 10,000, 시군비 10,000) - 돌봄가구 지원(40가구) × 10회 × 25천원 = 10,000천원 - 프로그램(10회) × 1,000천원 = 10,000천원	
총사업비	148,810천원(도비 74,405, 시군비 74,40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48,810		148,810	-	148,810		신규
국 비							
도 비	74,405		74,405	-	74,405		
시군비	74,405		74,405	-	74,405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메이커 마을공방 구축 사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공동체 활성화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마을공방 구축 사업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기반구축 － 인테리어 및 시설구축 25,000천원 x 2개소 = 50,000천원 ○ 장비구축 － 디지털 역량강화 장비 25,000천원 x 2개소 = 50,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00,000	-	100,000	-	100,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0	-	50,000	-	50,000		
시군비	50,000	-	50,000	-	5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만사형통 충남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온라인소통 플랫폼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참여제안 제도 정착 및 인식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0,200천원
- 사 업 량 : ‘만사형통 충남’ 의제 발굴 회의 운영, 상상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의제발굴 회의 자료 및 교육자료 등 인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만사형통 충남’을 통해 도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의제 발굴 회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만사형통 충남 운영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10,200천원 - 만사형통 충남 의제발굴 회의 운영 (연 4회) : 5,000천원 - 상상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5,000천원 - 회의자료 및 교육자료 등 인쇄 : 200천원	
총사업비	10,200천원(도비 10,2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200		10,200	7,000	3,200		계속
국 비							
도 비	10,200		10,200	7,000	3,2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한도희 (행) 2274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명상사업보조(307-02)

□ 사업개요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84,150천원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등 운영 : 68,000천원 - 100명 × 136천원 × 5회 = 68,000천원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교육 자료 인쇄 : 8,500천원 - 100명 × 17천원 × 5회 = 8,5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7,65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650천원 ○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 13,5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13,500천원 - 총회 및 워크숍 등 3회 × 4,500천원 = 13,500천원	

	○ 일반보상비(행사실비보상금) : 8,1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참석자 실비 등 : 8,100천원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 40,0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위탁 : 40,000천원	
총사업비	145,750천원(도비 145,7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45,750		145,750	125,100	20,650		계속
국 비							
도 비	145,750		145,750	125,100	20,6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3,200	110,464	12,736	8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윤형필 (행) 3478

충남민관협치회의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1,250천원
- 사 업 량 : 충남민관협치회의 정기회 운영 2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민관협치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실비 포함), 회의 물품 구입 등 관련 운영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4조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7조(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남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치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민관협치회의 운영 ○ 민관협치회의 등 각종 회의 위원 참석수당 20,700천원 · 민관협치회의 참석수당(정기회의) 150천원 × 2회 × 27명 = 8,100천원 ·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2회 × 9명 × 3개 분과 = 8,100천원 · 운영위원회 150천원 × 6회 × 5명 = 4,500천원 ○ 운영 물품 등 구입 550천원	
총사업비	21,250천원(도비 21,2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1,250		21,250	27,000	△5,750		계속
국 비							
도 비	21,250		21,250	27,000	△5,7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200	24,916	284	98.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8,000천원
- 사 업 량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등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운영 · 민관협치 포럼 3,000천원 × 1회 = 3,000천원 · 민관협치 워크숍 3,000천원 × 1회 = 3,000천원 ○ 찾아가는 민관협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강화 프로그램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 발표대회 운영 10,000천원 × 1회 = 10,000천원	
총사업비	18,000천원(도비 1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8,000		18,000	36,000	△18,000		계속
국 비							
도 비	18,000		18,000	36,000	△1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800	19,8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각종 민관협치 회의 등 참석자 실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각종 민관협치 관련 회의 등 참석자 실비 ○ 참석자 교통비 · 교통비 10천원 × 10회 × 25명 = 2,500천원 ○ 참석자 식비 · 식비 8천원 × 5회 × 50명 = 2,000천원	
총사업비	4,500천원(도비 4,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500		4,500	9,000	△4,500		계속
국 비							
도 비	4,500		4,500	9,000	△4,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5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협치 역량강화를 통한 도정 거버넌스 인식 확산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7,000천원
- 사 업 량 : 공무원 민관협치 인식제고 등 5개 과정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공모사업)
- 사업시행주체 :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료, 장소 임차비 등 관련 운영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공익활동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17,000천원 · 운영비 10,000천원 × 1개 단체 = 10,000천원 · 운영비 7,000천원 × 1개 단체 = 7,000천원 (5개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위원회·협치전문가·여성청년·공동체)	
총사업비	17,000천원(도비 1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7,000		17,000	45,000	△28,000		계속
국 비							
도 비	17,000		17,000	45,000	△2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500	31,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민관협치 관련 업무추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기반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정 전반에 대한 민관협치 정착 및 인식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2,300천원
- 사 업 량 : 민관협치 홍보물 제작, 위원회 실무자 회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각종 위원회 운영 실무자 회의 및 민관협치 홍보물 제작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관협치 관련 업무추진 ○ 각종 위원회 운영 실무자 회의 및 관련 협치교육 등 · 3,000천원 × 3회 = 9,000천원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 서면심사 : 1차 3,000천원, 2차 3,000천원 · 현장평가 및 컨설팅 150천원 × 2명 × 10건 = 3,000천원 · 책자 발간 20천원 × 400부 = 8,000천원 ○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도민참여사업 안내서 제작 등 · 9천원 × 700부 = 6,300천원	
총사업비	32,300천원(도비 32,3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2,300		32,300	38,000	△5,700		계속
국 비							
도 비	32,300		32,300	38,000	△5,7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44,889	111	9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민관협치 활성화 업무추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기반 구축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협치기반 조성 및 도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확산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060천원
- 사 업 량 : 협치업무 협의 등 출장 34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각종 민관협치 활성화 업무 협의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출장 여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관협치 활성화 업무추진 ○ 비영리민간단체 현장점검 · 45천원 × 17회 × 2명 = 1,530천원 ○ 민관협치 기반 조성 · 45천원 × 17회 × 2명 = 1,530천원	
총사업비	3,060천원(도비 3,06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060		3,060	4,500	△1,440		계속
국 비							
도 비	3,060		3,060	4,500	△1,44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489	11	9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공익활동 활성화 기반구축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효과적인 도민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수립 및 집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500천원
- 사 업 량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연구·자문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개선사항 심의를 위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공익활동을 행하는 도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자발성·창조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도민의 공익활동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둔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익활동 활성화 업무 추진 ○ 공익활동 촉진위 등 각종 회의 위원 참석수당 · 회의수당 및 교통실비 120천원 × 4회 × 15명 = 7,200천원 · 회의 운영비(현수막, 소모품 구입 등) 200천원 × 4회 = 800천원 ○ 공익활동 활성화 등 관련 각종 연구, 자문비 · 활성화 방안 연구·자문·평가 등 : 500천원	
총사업비	8,500천원(도비 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500		8,500	9,000	△500		계속
국 비							
도 비	8,500		8,500	9,000	△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9,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박용희 (행) 2275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민단체 공동협력 관계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사회 가치 확산 등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4,425천원
- 사 업 량 : 3단체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공모사업)
- 사업시행주체 : 도내 시민단체
- 사업 내용 : 지역공동체 형성·조성을 위한 도내 시민단체 대상 공익사업 공모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1.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 공모사업 진행 · 사업비 11,475천원 × 3단체 = 34,425천원	
총 사업비	34,425천원(도비 34,42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4,425		34,425	40,500	△6,075		계속
국 비							
도 비	34,425		34,425	40,500	△6,07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500	40,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시설관리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통 계 목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경제·자치·농촌·복지 분야의 센터(기관)들이 상호 교류·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 거점공간 운영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00,00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공감마루 시설장비 유지 운영 등
- 지원 근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5조, 제18조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공감마루 시설 및 운영 지원 ○ 충남공감마루 시설관리운영(공공운영비) 200,000천원 - 고정관리비 : 시설관리, 청소관리, 조경관리, 경비관리 등(140,000천원) - 유동관리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60,000천원)	
총사업비	200,000천원(도비 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0		200,000		200,000		신규
국 비							
도 비	200,000		200,000		2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충남공감마루 시설지원 (가구 등 제작 및 구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경제·자치·농촌·복지 분야의 센터(기관)들이 상호 교류·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 거점공간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
- 사업 기간 : 2018.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10,00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공감마루 가구 등 제작 및 구입
- 지원근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5조, 제18조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공감마루 시설 및 운영 지원 ○ 충남공감마루 가구 등 제작 및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00천원	
총사업비	510,000천원(도비 5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3,490,000	12,690,000	510,000	5,823,700	△5,313,700	290,000	계속
국 비	3,370,000	3,370,000	-	-	-	-	균특, 특교세
도 비	10,120,000	9,320,000	510,000	5,823,700	△5,313,700	29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541,268	1,786,058	1,755,210	50.4%	1,704,18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완료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익적 시민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재 육성 등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861,000천원**
- 사 업 량 : 공익활동 지원 목적의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연간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시민재단
- 사업 내용 : 공익활동사업 지원, 실무역량강화 및 시민교육사업 지원, 공익활동 공간 제공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 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성장과 교육 : 154,882천원 · 단체설립 지원 5,000천원, 공익활동 자원조사 10,000천원, 공익활동 역량강화교육 20,000천원 청년공익활동가육성사업 16명 *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 119,882천원 ○ 활동 지원 : 199,800천원 · 공간지원 2,800천원, 도민 공익활동 지원 197,000천원 ○ 공익문화 확산 : 58,200천원 · 홍보 18,800천원, 공익활동 아카이빙 20,000천원, 협력사업 9,400천원 공익활동컨퍼런스 10,000천원 ○ 인건비(6명) : 329,337천원 · 기본급 227,497천원, 제수당 71,780천원, 퇴직총당금 30,060천원 ○ 운영비 : 118,781천원 · 일반운영비 75,785천원, 여비 13,96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교육훈련비 1,800천원, 사회보험료부담금 24,236천원	
총사업비	861,000천원(도비 86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61,000		861,000	849,000	12,000		계속
국 비							
도 비	861,000		861,000	849,000	12,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96,000	696,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박용희 (행) 2275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과 ‘사회적 가치’활동 경험 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66,710천원** ※기업부담 15,190천원 별도
- 사 업 량 : 청년 16명 선발·배치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시민재단
- 사업 내용 : 청년-공익단체간 1:1 매칭을 통해 공익활동 현장경험 및 공동학습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 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 281,900천원 ○ 인건비 136,400천원 · 청년공익활동가 13명 × 2,200천원 × 2개월 = 57,200천원 · 청년공익활동가 3명 × 2,200천원 × 12개월 = 79,200천원 ○ 교육비 15,500천원 · 청년공익활동가 13명 × 250천원 × 2개월 = 6,500천원 · 청년공익활동가 3명 × 250천원 × 12개월 = 9,000천원 ○ 인센티브 130,000천원 · 청년공익활동가 13명 × 10,000천원 = 130,000천원	
총사업비	281,900천원(국비 140,950, 도비 125,760, 기업부담 15,19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81,900		281,900	321,666	△39,766		계속
국 비	140,950		140,950	160,833	△19,883		
도 비	125,760		125,760	132,033	△6,273		
시군비							
기 타	15,190		15,190	28,800	△13,610		기업부담 별도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45%, 기업부담 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40,000	34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력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박용희 (행) 2275

공공갈등 관리 역량강화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세부사업	공공갈등관리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갈등조정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방문교육 등으로 공공갈등 해소·해결을 위한 관계자 역량 강화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도내 공공갈등 조정 및 해소
- 사업 위치 : 도내(도청 및 공공갈등 현장)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5,500천원**
- 사 업 량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회, 갈등조정협의회 8회, 공공갈등토론회 2회, 시·군 갈등조정 민간 전문가 워크숍 1회, 현장컨설팅 3회, 맞춤형 방문교육 4회, 공공갈등 담당자 워크숍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공공갈등 해소·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갈등조정 민간전문가 양성, 심화교육, 방문교육 및 현장컨설팅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및 갈등조정협의회 관련 현안 회의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0조, 제21조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1조(재정지원 등)

-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갈등 선제적·사전적 예방 : 3,740천원 ○ 갈등관리심의회위원회 참석수당 등 : 3,740천원 - 참석수당 등 : 110,000 × 15명 × 2회 = 3,300천원 - 인쇄비 등 : 220,000 × 2회 = 440천원 ■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조정 : 12,440천원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 7,840천원 - 참석수당 : 110,000 × 8명 × 8회 = 7,040천원 - 인쇄비 등 : 100,000 × 8회 = 800천원 ○ 공공갈등토론회 운영 등 : 4,600천원 - 강사수당 : 250,000 × 2인 × 2회 = 1,000천원 - 참석수당 : 160,000 × 5인 × 2회 = 1,600천원 - 인쇄비 등 : 1,000,000 × 2회 = 2,000천원 ■ 갈등관리 역량 강화 : 9,320천원 ○ 시·군 갈등조정 민간전문가 워크숍 : 1,960천원 - 참석수당 등 : 110,000 × 16인 × 1회 = 1,760천원 - 인쇄비 등 : 200,000 × 1회 = 200천원 ○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 1,890천원 - 전문가 참석수당 등 : 210,000 × 3명 × 3회 = 1,890천원 ○ 공공갈등 맞춤형 방문교육(찾아가는 교육) : 1,000천원 - 강사수당 등 : 250,000 × 1명 × 4회 = 1,000천원 ○ 공공갈등 담당자 워크숍 : 4,470천원 - 강사수당 : 500,000 × 2인 × 2회 = 2,000천원 - 인쇄비 등 : 1,235,000 × 2회 = 2,470천원	
총사업비	25,500천원(도비 25,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500		25,500	27,000	△1,500		계속
국 비	-	-	-	-	-		
도 비	25,500	-	25,500	27,000	△1,500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650	16,641	9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갈등정책팀	장영환 (행) 2270	최정태 (행) 3425	김성희 (행) 2276

사 회 적 경 제 과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경제분야 업무 추진 등 147
2.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49
3.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151
4. 계약학과 지원 153
5.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운영 155
6.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당사자조직) ... 157
7.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시군) ... 159
8.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R&D)(국가직접) 161
9.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비R&D)(국가직접) ... 163
10. 사회적경제기금 165
1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67
1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69
1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71
14. 지역(광역) 특화사업 173

15.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방안 연구 ..	175
16.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177
17.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179
18.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181
19.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 추진 등	183
20. 마을기업 육성	185
21.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187
22.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	189
23.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	191
24.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193
25.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195
26.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197
27.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199
28.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201

사회적경제분야 업무 추진 등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분야 관련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6,250천원**
- 사 업 량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사회적경제실무협의회 각4회, 심사 참석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사회적경제분야 시책회의 및 심사 참석수당 지급, 소모품 구입비용 등
- 지원근거 :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분야 업무 추진 등 : 16,250천원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 : 6,400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x 10명 x 4회 = 6,000 · 인쇄비, 다과비 등 : 100천원 x 4회 = 400 ○ 사회적경제실무협의회 운영 : 6,400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x 10명 x 4회 = 6,000 · 인쇄비, 다과비 등 : 100천원 x 4회 = 400 ○ 사회적경제분야 시책회의 및 심사 등 수당 : 3,450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x 4명 x 4회 = 2,400 · 심사수당 : 10천원(1건) x 5건 x 4명 x 4회 = 800 · 인쇄비, 다과비 등 : 250천원 x 1식 = 250	
총사업비	16,250천원(도비 16,2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6,250		16,250	36,000	△19,750		계속
국 비							
도 비	16,250		16,250	36,000	△19,7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000	35,994	6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김가영 (행) 2281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900,00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3년)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사회경제연대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경영지원 및 홍보, 네트워크 강화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900,000천원 ○ 사업비 : 350,509 - 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육성 - 시장 조성 및 판매 촉진 - 협력 시스템 구축 - 인적·물적 토대 육성 ○ 인건비 : 275,595 * 센터장(1명) / 팀장(3명), 직원(6명) ○ 제수당 : 159,836 - 4대 보험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퇴직적립금 = 159,836천원 ○ 운영비 : 114,060 - 시설유지보수, 사무집기 및 인쇄, 냉·난방기 등의 소모품비	
총사업비	900,000천원(도비 9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900,000		900,000	900,000	0		계속
국 비							
도 비	900,000		900,000	900,000	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20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이찬원 (행) 3972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교협동조합 발굴·지원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인식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사 업 량 : 학교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리더 양성, 사회적경제 캠프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도교육청과 협업사업)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공모)
- 사업 내용 : 학교협동조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대한 현장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 100,000천원 ○ 컨설턴트 인건비 등 : 51,500천원 · 책임컨설턴트 : 2,100천원 × 1명 × 10월 = 21,000천원 · 컨설턴트 : 1,300천원 × 2명 × 10월 = 26,000천원 · 사회보償료 등 : 150천원 × 3명 × 10월 = 4,500천원 ○ 학교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코디네이터 교육리더 양성과정 : 11,000천원 · 강사료 : 8,000천원 - 850천원 × 5회 = 4,250천원 / 500천원 × 5회 = 2,500천원 / 250천원 × 5회 = 1,250천원 · 홍보물 제작 : 200천원 × 15회 = 3,000천원 ○ 학교협동조합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 : 15,000천원 · 버스 임차료 : 1,000천원 × 2대 = 2,000천원 · 강사료 : 500천원 × 3명 × 2일 = 3,000천원 · 진행요원 : 200천원 × 5명 × 2일 = 2,000천원 · 숙박 및 식사, 진행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 : 160천원 × 50명 = 8,000천원 ○ 성장지원(강사료, 컨설팅, 임차료 등) : 12,500천원 · 공감대확산(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비 등) : 500천원 × 15회 = 7,500천원 · 강사료 5,000천원 : 500천원 × 5회 = 2,500천원 / 250천원 × 10회 = 2,500천원 ○ 여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50,000, 부담금(도 교육청 전입금)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000		100,000	100,000	0		계속
국 비							
도 비	50,000		50,000	50,000	0		
시군비							
기 타	50,000		50,000	50,000			부담금

* 보조율 : 도비 50%, 부담금(도 교육청 전입금)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0,000	8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계약학과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96,800천원
- 사 업 량 : 계약학과 1식(학생등록금 30명, 교육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도내대학 연계 추진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도내 대학교에 계약학과(사회적경제학과) 설치를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계약학과 지원 : 96,800천원 ○ 학생 등록금 79,800 · 1학년 등록금(신입생) : 1,330천원 × 15명 × 2학기 = 39,900천원 · 2학년 등록금(재학생) : 1,330천원 × 15명 × 2학기 = 39,900천원 (등록금 2,390천원 / 도비부담분 55.6%, 학생부담 44.4%) ○ 교육비 17,000 · 홍보비(학생모집홍보물품, 모집요강 등 제작비) : 2,000천원 · 유인물비(과목별 수업자료 복사비, 사업 결과보고서 제본비 등) : 1,000천원 · 회의비(교육과정위원회) : 100천원*3명*4회 = 1,200천원 ·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지원비(3개팀 구성운영, 멘토비, 회의비등 지원) : 1,500천원 · 학생 오리엔테이션 2회(1, 2학기 개시 전) : 2,050천원 · 학생모집 홍보(산업체 방문) 및 기타 출장 : 25회*50천원 = 1,250천원 · 선진업체 견학 등 : 2회*1,000천원 = 2,000천원 · 학기 종료 후 학생만족도, 학업성취도 조사 : 2,500천원 ·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 1회(년 1회 결과보고) : 1,000천원 · 학생안전보험가입 보험료, 저작권료, 복사기 임대료,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등 : 2,500천원	
총사업비	96,800천원(도비 96,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96,800		96,800	54,900	41,900		계속
국 비							
도 비	96,800		96,800	54,900	41,9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김가영 (행) 2281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 및 예비 창업자 공간제공 등 좋은 일자리 기반마련
- 사업 위치 : 충남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55,000천원
- 사 업 량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 사업시행방법 : 사업대상 공모 심사 선정
- 사업시행주체 : 공모에 선정된 운영기관
- 사업 내용 : 사회적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지원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창업지원 교육센터 2개소 운영비 : 255,000천원 (127,500천원*2) ○ 상근직원 1명 인건비 - 52,000천원 (26,000천원*2개소) ○ 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체험)비, 시제품 제작시연 등 - 106,000천원 (53,000천원*2개소) ○ 창업 및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67,000천원 (33,500천원*2개소) ○ 강사수당 등 기타 교육운영비, 센터 운영비 등 - 30,000천원 (15,000천원*2개소)	
총사업비	255,000천원(도비 25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5,000		255,000	324,000	△69,000		계속
국 비							
도 비	255,000		255,000	324,000	△6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24,000	324,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전유리 (행) 228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 (당사자 조직)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대 시장 형성으로 조직의 자생적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
- 사업 위치 : 충남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4,000천원**
- 사 업 량 : 광역 사회적경제 당사자 네트워크 조직 2개소 이상
- 사업시행방법 : 공모
- 사업시행주체 : 사업대상 공모 심사 선정
- 사업 내용 : 네트워크 조직의 맞춤형 협동화 실천,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육성으로 협력성장 기반강화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당사자 조직) : 34,000천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당사자 조직) · 17,000천원 × 2개소 = 34,000천원	
총사업비	34,000천원(도비 3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4,000		34,000	40,000	△6,000		계속
국 비							
도 비	34,000		34,000	40,000	△6,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0	67,328	22,672	7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박미란 (행) 397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시군)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9,000천원
- 사 업 량 : 사회적경제 시군 네트워크 조직 5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
- 사업 내용 : 네트워크 조직의 맞춤 협동화 실천,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육성으로 협력성장 기반강화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시군) : 130,000천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시군) · 26,000천원 × 5개소 = 130,000천원	
총사업비	130,000천원(도비 39,000, 시군비 9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30,000		130,000	120,000	100,000		계속
국 비							
도 비	39,000		39,000	36,000	3,000		
시군비	91,000		91,000	84,000	7,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박미란 (행) 3971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R&D)(국가직접)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 사업 위치 : 충남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76,801천원**
- 사 업 량 : 스마트유통(푸드 플랫폼) 기술개발 1식, 전통웰빙식품 기술개발 1식, 신규품목 1식
- 사업시행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따른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전담 추진
- 사업시행주체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해당분야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사업 내용 : ① (스마트유통) 사회적경제 통합 물류·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상품구매 플랫폼 기술개발
 ② (전통웰빙식품)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전통웰빙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R&D) : 672,336천원 ○ 전통웰빙식품 : 177,570천원 (국비 89,999천원, 도비 38,571천원, 자부담 49,000천원) - 177,570천원 × 1식 = 177,570천원 ○ 스마트 유통 : 275,073천원 (국비 168,751천원, 도비 72,322천원, 자부담 34,000천원) - 275,073천원 × 1식 = 275,073천원 ○ 신규과제 : 219,693천원 (국비 153,785천원, 도비 65,908천원) - 219,693천원 × 1식 = 219,693천원	국가직접 사업
총사업비	672,336천원(국비 412,535천원, 도비 176,801천원, 민간부담금 83,000천원(현물 포함))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72,336		672,336	291,000	381,336		계속
국 비	412,535		412,535	219,000	193,535		
도 비	176,801		176,801	72,000	104,801		
시군비							
기 타	83,000		83,000	70,583	12,41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민간부담금 제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7,000	197,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박미란 (행) 3971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비R&D)(국가직접)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47,000천원**
- 사 업 량 : 스마트 유통 1식
- 사업시행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따른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전담 추진
- 사업시행주체 : 도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주관하고 해당분야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물류·유통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비R&D) : 583,893천원 ○ 스마트유통 : 583,893천원 - 직접비 : 565,989천원 · 인건비 262,157천원, 학생인건비 10,500천원, 연구활동비 242,916천원, 연구과제추진비 32,644천원, 연구수당 17,772천원 - 간접비 : 17,904천원 · 인력지원 4,801천원, 연구지원 13,103천원	국가직접 사업
총사업비	583,893천원(국비 343,000천원, 도비 147,000천원, 민간부담금 93,89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83,893		583,893	-	583,893		계속
국 비	343,000		343,000	-	343,000		
도 비	147,000		147,000	-	147,000		
시군비							
기 타	93,893		93,893	-	93,893		민간부담금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민간부담금 제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2,000	17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박미란 (행) 3971

사회적경제기금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충남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50,000천원
- 사 업 량 :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1식
- 사업시행주체 : 신탁중앙회 및 지역신탁 16개 법인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원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차보전
5.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기금 : 550,000천원 ○ 기금회계로의 전출금 550,000천원×1식 = 550,000천원	
총사업비	550,000천원(도비 5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50,000		550,000	-	550,000		계속
국 비							
도 비	550,000		550,000	-	5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윤덕희 (행) 3941	박미란 (행) 397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778,500천원**
- 사 업 량 :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전문)인력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4,580,000천원 ○ 일반인력 인건비 : 3,471,200천원 · 207명 x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2,003,910원 x 12개월 x 70% ≒ 3,471,200천원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월 209시간×8,72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9.955) ※ 단가기준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70%) 적용 ○ 전문인력 인건비 : 1,108,800천원 · 66명 x 2,000천원 x 12개월 x 70% ≒ 1,108,800천원 * 단가기준 : 전문인력 지원금 (2,000천원~2,500천원) 및 자부담율 제외(10%~50%) ※ 4대 보험 1인당 월 181,430원 - 2021년 시급적용 8,720원 x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4대보험 요율 적용 ※ 2020년 4대 보험 요율 9.955(고용 1.05%, 산재 0.73%, 건강 3.675%, 국민연금 4.5%)	
총사업비	4,580,000천원(국비 3,435,000, 도비 343,500, 시군비 801,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580,000		4,580,000	6,164,000	△1,425,400		계속
국 비	3,435,000		3,435,000	4,623,000	△1,188,000		균특
도 비	343,500		343,500	462,300	△118,800		
시군비	801,500		801,500	1,078,700	△277,2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5%, 도비 7.5%, 시군비 1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34,100	3,334,1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희정 (행) 397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보험료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사회적기업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97,000천원**
- 사 업 량 : 충청남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5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 제2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360,000천원 ○ 인증 사회적기업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81,430원 · 고용보험 1인당 월 19,140원 × 165명 × 12월 ≍ 37,900천원 · 산재보험 1인당 월 13,300원 × 165명 × 12월 ≍ 26,335천원 · 건강보험 1인당 월 66,980원 × 165명 × 12월 ≍ 132,621천원 · 국민연금 1인당 월 82,010원 × 165명 × 12월 ≍ 163,144천원 ※ 2021년 시급적용 8,720원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요율 적용 ※ 2020년 4대 보험 요율(고용 1.05%, 산재 0.73%, 건강 3.675%, 국민연금 4.5%)	
총사업비	360,000천원(국비 270,000, 도비 27,000 시군비 6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60,000		360,000	442,670	△82,670		계속
국 비	270,000		270,000	332,000	△62,000		균특
도 비	27,000		27,000	33,200	△6,200		
시군비	63,000		63,000	77,470	△14,47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5%, 도비 7.5%, 시군비 1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46,029	246,029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희정 (행) 397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89,370천원**
- 사 업 량 :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발비, 기술, 홍보비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493,000천원 ○ 인증사회적기업 · 1개 기업당 100,000천원 x 15개소 x 20% = 300,0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1개 기업당 50,000천원 x 20개소 x 19.3% = 193,000천원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운영지침 준용	
총사업비	493,000천원(국비 345,000, 도비 44,370, 시군비 103,63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93,000		493,000	600,000	△107,000		계속
국 비	345,000		345,000	420,000	△75,000		국고
도 비	44,370		44,370	54,000	△9,630		
시군비	103,630		103,630	126,000	△22,37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0,666	590,665	1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희정 (행) 3973

지역(광역) 특화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광역특화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한 모델 발굴
-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33,000천원**
- 사 업 량 : 지역특화사업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공모선정
- 사업시행주체 : 민간대행
- 사업 내용 : 자치단체(광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개발 및 판로개척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단체 지역(광역)특화사업 : 333,000천원 ○ 지역(광역) 특화사업 · 111,000천원 x 3개소 = 333,000천원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 준용	
총사업비	333,000천원(국비 233,000, 도비 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33,000		333,000	354,000	△21,000		계속
국 비	233,000		233,000	248,000	△15,000		국고
도 비	100,000		100,000	106,000	△6,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0,000	235,050	14,950	94.0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희정 (행) 397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방안 연구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청양군 청양읍 (구)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조성예정인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 사업 기간 : 2021.2.~2021.7(신규 사업)
- 예 산 액 : 58,500천원
- 사 업 량 : 학술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혁신타운 운영방안 도출, 관리운영주체(방법) 및 조직구성안 마련, 재정계획 수립, 비전과 운영방안 제시, 특화전략 및 방안 제시,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제언 등
- 지 원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리운영방안 용역 : 58,500천원 ○ 인건비 : 37,043천원 ○ 경 비 : 11,300천원 ○ 이 윤 : 4,836천원 ○ 부가가치세 : 5,321천원	
총사업비	58,500천원(도비 5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8,500		58,500	0	58,5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58,500		58,500	0	58,500	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2020.9.25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이영은 (행) 228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자부「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됨으로('20.04) 청양군 (구)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사회적 경제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 사업 기간 : 2020.4.~2022.12.(계속비 사업)
- 예 산 액 : **8,540,000천원**
- 사 업 량 : 연면적 12,780.2㎡, 2동(증축, 리모델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기업입주, 지원조직 사무실, 회의자료, 연구·실험, 공용, 지역특화센터 등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지 원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2021년 사업비) : 8,540,000천원 ○ 공사비(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7,720,000천원 * 1식 = 7,720,000천원 ○ 감리비 : 800,000천원 * 1식 = 800,000천원 ○ 시설부대비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총사업비	8,540,000천원(국비 4,270,000 도비 2,562,000 부담금(군비) 1,70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8,000,000		8,540,000	0	8,540,000	19,460,000	신규
국 비	14,000,000		4,270,000	0	4,270,000	9,730,000	균특
도 비	8,400,000		2,562,000	0	2,562,000	5,838,000	
시군비	5,600,000		1,708,000	0	1,708,000	3,892,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2020년	2020년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이영은 (행) 2282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조직발굴 및 육성
	통 계 목	일반운영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7,000천원
- 사 업 량 : 연 8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선정 등 심사위원회 개최 연 8회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 27,000천원 ○ 사업설명회(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 연 2회 × 132부 × 15,000원 = 3,960천원 ○ 참석수당(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 연 2회 × 4개 사업 × 8명 × 150,000원 = 9,600천원 ○ 심사자료 인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 연 2회 × 4개 사업 × 8명 × 3권 × 70,000원 = 13,440천원 *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총사업비	27,000천원(도비 2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7,000		27,000	0	27,00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27,000		27,000	0	27,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희정 (행) 3973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립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지속 성장 유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사회적기업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7,600천원**
- 사 업 량 : 약 20개 기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생산·판매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시설 장비, ICT제품개발비 등 구입 교체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9조(시설비 등 지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시설비 등 지원)

-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 192,000천원 ○ 시설장비 지원 · 20개 기업 × 9,600천원 = 192,000천원	
총사업비	192,000천원(도비 57,600, 시군비 57,600, 자부담 76,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92,000		192,000	285,000	△93,000		계속
국 비	0		0	0	0		
도 비	57,600		57,600	85,500	△27,900		
시군비	57,600		57,600	85,500	△27,900		
기 타	76,800		76,800	114,000	△37,2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0	9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희정 (행) 3973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 추진 등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마을기업 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9,435천원
- 사 업 량 : (예비)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2회,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1회, 심사
참석수당 및 인쇄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 마을기업 발굴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 마을기업 관련 심사수당, 참석수당 및 인쇄비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마을기업 심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 추진 등 : 9,435천원 ○ (예비)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7,660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x 7명 x 2회 = 2,100 · 심사수당 : 20천원(1건) x 17건 x 7명 x 2회 = 4,760 · 인쇄비, 다과비 등 : 400천원 x 2회 = 800 ○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1,775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x 7명 x 1회 = 1,050 · 심사수당 : 20천원(1건) x 3건 x 7명 x 1회 = 420 · 인쇄비, 다과비 등 : 305천원 x 1회 = 305	
총사업비	9,435천원(도비 9,43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9,435		9,435	0	9,435		신규
국 비							
도 비	9,435		9,435	0	9,43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전유리 (행) 2283

마을기업 육성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마을기업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507,000천원
- 사 업 량 : 28개 기업
- 사업시행방법 : 사업대상 공모 선정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5인 이상 마을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기업 육성사업 : 780,000천원 ○ 신규 마을기업 지정 · 50,000천원×9개소 = 450,000천원 (국도비 292,500천원) ○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 30,000천원×6개소 = 180,000천원 (국도비 117,000천원) ○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 20,000천원×2개소 = 40,000천원 (국도비 26,000천원) ○ 예비 마을기업 지정 · 10,000천원×11개소 = 110,000천원 (국도비 71,500천원)	
총사업비	780,000천원(국비 390,000, 도비 117,000, 시군비 27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80,000	0	780,000	820,000	△40,000		계속
국 비	390,000		390,000	410,000	△20,000		균특
도 비	117,000		117,000	123,000	△6,000		
시군비	273,000		273,000	287,000	△14,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13,100	273,000	140,100	66%	130,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전유리 (행) 2283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굴을 도모하고, 마을기업 공모 및 육성사업에 따른 행정지원 역할 수행
- 사업 위치 : 충남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74,000천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사업대상 공모 선정
- 사업시행주체 : 공모선정 민간단체
- 사업 내용 : 마을기업 및 신청 희망자에 대한 설립전 교육, 컨설팅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 474,000천원 ○ 인건비 : 33,000천원 x 7인 = 231,000천원 ○ 사업비 : 173,700천원 · 설립전교육 및 신규 모델 발굴 확산 : 33,000천원 · 마을기업 선정지원 : 12,000천원 ·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60,700천원 · 판로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 68,000천원 ○ 관리운영비 : 69,300천원 · 국내여비 : 400천원 x 5인 x 12개월 = 24,000천원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사무장비 및 임차료) : 12,200천원 · 기타부대비용 및 보험료 등 일반관리비 : 33,100천원	
총사업비	474,000천원(국비 237,000, 도비 23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74,000	0	474,000	462,000	12,000		계속
국 비	237,000		237,000	231,000	6,000		균특
도 비	237,000		237,000	231,000	6,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62,000	462,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전유리 (행) 2283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활동가로 육성
-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602,602천원**
- 사 업 량 : 청년활동가* 27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충남도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업시행방법 : 공모 선정된 운영기관(민간단체)
- 사업시행주체 : 나사렛대학교
- 사업 내용 :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회적경제 조직에 청년활동가 역할 교육 후 현장 배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 732,202천원 ○ 인건비 : 648,000천원 - 2,000천원 × 27명 × 12개월 = 648,000천원 ○ 교육비 : 84,202천원 - 강사수당 등 기타 교육운영비, 기관 운영비 등 = 84,202천원	
총사업비	732,202천원(국비 366,101 도비 236,501 기타 129,600) ※기업부담 : 인건비의 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32,202	0	732,202	732,202	0		계속
국 비	366,101		366,101	366,101	0		국고
도 비	236,501		236,501	236,501	0		
시군비							
기 타	129,600		129,600	129,600	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32%, 기타 1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41,200	541,2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전유리 (행) 2283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
- 사업 위치 : 13개 시·군(서천군, 예산군 미참여)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731,682천원**
- 사 업 량 : 청년도제 교육생* 46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충청남도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업시행방법 : 시군대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군(서천군, 예산군 미참여)
- 사업 내용 :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의 전문기술 전수로 청년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경영지원 등)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운영 : 1,227,572천원 ○ 인건비 : 1,104,000천원 - 2,000천원 × 46명 × 12개월 = 1,104,000천원 ○ 교육비 : 123,572천원 - 강사수당 등 기타 교육운영비 = 123,572천원	
총사업비	1,227,572천원(국비 613,786 도비 117,896 시군비 275,090 기타 220,800) ※기업부담 : 인건비의 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27,572	0	1,227,572	1,227,572	0		계속
국 비	613,786		613,786	613,786	0		국고
도 비	117,896		117,896	117,896	0		
시군비	275,090		275,090	275,090	0		
기 타	220,800		220,800	220,800	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9.6%, 시군비 22.6%, 기타 17.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31,900	697,455	34,445	9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전유리 (행) 2283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주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사회적가치 확산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7-31(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사 업 량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및 솜인솜(가게안의 가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 사업 내용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매, 판로확보, 상품개발, 교육 및 컨설팅과 솜인솜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진입과 서로 상생하는 시장모델 형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③ 도지사는 인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 100,000천원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 100,000천원 · 1층 판매장 운영 집기 시설 등 임차료 10여종 : 15,000천원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홍보 : 1,000천원 × 5회 = 5,000천원 · 사무 공간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 집기 임차료 : 12개월 × 1,500천원 = 18,000천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매뉴얼 제작 : 10천원 × 500권 = 5,000천원 · 컨설팅 및 교육 : 250천원 × 16회 = 4,000천원 · 솜인솜 매대 설치 및 운영 등 : 10,000천원 × 2개소 = 20,000천원 ·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상품개발 및 사진 촬영 제작 등 : 10,000천원 · 배너제작 및 홍보물 제작 : 1,000천원 × 5회 = 5,000천원 · 소모품 구입, 여비,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 12개월 × 1,500천원 = 18,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000		100,000	100,000	0		계속
국 비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30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활성화 프로모션 지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5,000천원
- 사 업 량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등) 기획전 등 판매활성화 프로모션 지원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유통 전문역량 민간단체 등 공모 선정
- 사업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판로확보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③ 도지사는 인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 85,000천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상품 30천원 기준일 때) · 상품발굴 및 컨설팅 등 평가위원 수당 : 150천원 × 4명 × 2회 = 1,200천원 · 30%특별할인 쿠폰발행 : 9천원 × 30일 × 200명 = 54,000천원 · 20%특별할인 쿠폰발행 : 6천원 × 30일 × 150명 = 27,000천원 · 웹자보 등 배너 제작 : 400천원 × 2식 = 800천원 · 홍보물 제작 : 10천원 × 200개 = 2,000천원	
총사업비	85,000천원(도비 8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5,000		85,000	0	85,000		신규
국 비							
도 비	85,000		85,000	0	8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정책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
	단위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증가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도모 및 공유경제 활성화 인식 확산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
- 예 산 액 : 40,000천원
- 사 업 량 : 도민 대상 공유경제 교육 5회,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교육 8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공유단체(공모 선정)
- 사업 내용 : 공유경제 사업지원 및 공유자원 발굴·관리를 위하여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공유단체 중 시행기관을 선정, 일반도민 공유경제 교육 및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교육 및 홍보)

-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 40,000천원 ○ 일반도민 및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 40,000천원 · 강사료 300천원 × 8명 × 13회 = 31,200천원 · 교육자료 인쇄비 150천원 × 13회 = 1,950천원 ·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 350천원 × 13회 = 4,55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300천원	
총사업비	40,000천원(도비 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0,000		40,000	50,000	△10,000		계속
국 비							
도 비	40,000		40,000	50,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
	단위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공유단체·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공유경제 활동을 선도하고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
- 예 산 액 : 51,000천원
- 사 업 량 : 공유단체·공유기업(3~5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공모)
- 사업 내용 : 도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및 공유단체·기업의 역량강화 및 홍보 등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금 등 지원)

-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51,000천원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공모에 의거 3~5개 선정) · 단체 및 기업의 사업유형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발굴, 컨설팅, 역량강화 및 홍보 등 (10,000천원~20,000천원) × (3~5개 단체·기업) = 51,000천원	
총사업비	51,000천원(도비 5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1,000		51,000	60,000	△9,000		계속
국 비							
도 비	51,000		51,000	60,000	△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
	단위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 사업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도모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5,000천원
- 사 업 량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3개~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대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15개 시·군(공모)
- 사업 내용 : 시군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하여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150,000천원 ○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공모에 의거 3~5개 선정) · 시군 사업목적에 맞게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비 30%, 시군비 70%) (10,000천원~30,000천원) × (3~5개 시군) = 45,000천원	
총사업비	15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10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50,000		150,000	200,000	△50,000		계속
국 비							
도 비	45,000		45,000	100,000	△55,000		
시군비	105,000		105,000	100,000	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청 년 정 책 과

청년정책과

1.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07
2. 청년네트워크 운영	209
3.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212
4.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214
5.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216
6.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	218
7.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220
8.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222
9. 지역사회 청년세어하우스 운영	224
10.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226

11.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	228
12.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230
13.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232
14.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234
15.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236
16.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238
17.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240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42
19.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244
20.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246
21.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	248
22.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250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미리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들의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등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1,835천원
- 사 업 량 : 회의(정기·수시) 5회, 역량강화 워크숍 1회, 지역청년과의 네트워킹 2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정기, 수시) 개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청년 네트워킹 등 추진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7,650천원 ※ 의무절감 15% ○ 회의 5회(정기 2회, 수시 3회) 운영 = 7,65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13명(위촉직) × 5회 = 6,5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 11.5천원 × 20부 × 5회 = 1,150천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운영비) : 2,160천원 ※ 의무절감 10% ○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1,500천원 · 행사장 임차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외부강사료 및 여비 : 250천원 × 2명 × 1회 = 5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교통여비 20천원) · 교육자료 제작 : 16천원 × 25부 = 400천원 · 사무용품 등 구입 : 5천원 × 20명 × 1회 = 100천원 ○ 지역청년과의 네트워킹 : 660천원 · 행사장 임차비 : 330천원 × 2회 = 660천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2,025천원 ※ 의무절감 10% ○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1회) 및 지역청년과의 네트워킹(2회) = 2,025천원 · 실비(교통비 등) : 20천원 × 100명(연 인원) ≒ 2,025천원	
총사업비	11,835천원(도비 11,83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1,835		11,835	18,000	△6,165		
국 비							
도 비	11,835		11,835	18,000	△6,16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1,655	6,345	6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안연순 (행) 2290	이상의 (행) 3981	노경원 (행) 3991

청년네트워크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기타보상금(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청년중심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도정 참여 기회 마련 등 청년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0,035천원
- 사 업 량 : 청년네트워크 100명 구성, 역량강화(자격과정) 1회 운영, 전국 네트워크교류회 1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분과위별 정책 연구 지원 등 추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신설 2020. 7. 10.>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언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네트워크 운영(사무관리비) : 8,500천원 ※ 의무절감 15% ○ 청년네트워크 활동 : 8,500천원 · 청년네트워크 활동 사례집 : 25천원 × 100부 = 2,500천원 · 전문가 자문수당 : 200천원 × 1명 × 15개 시·군 × 2회 = 6,0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자문수당 지급기준 준용(2시간 심사)	

구 분	산 출 액	비 고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운영비) : 14,985천원 ※ 의무절감 10% ○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8,800천원 · 역량강화 교육(자격과정)비 : 88천원 × 100명 = 8,8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전국 교류회, : 6,185천원 · 행사장 임차료 : 1,000천원 × 1회 = 1,000천원 · 행사시설(음향장비 등) 임차료 : 1,000천원×1회 = 1,000천원 · 중식비 : 8천원 × 100명 × 1회 = 800천원 · 강사비 : 230천원 × 3명 × 1회 = 69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 행사지원인력 인건비 : 100천원 × 3명 × 1회 = 300천원 · 교재 제작비 : 11천원 × 100명 × 1회 = 1,1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2천원 × 100명 × 1회 = 200천원 · 행사 스케치 영상촬영 및 제작 : 300천원 × 1회 = 300천원 · 행사 운영비 : 795천원 × 1회 = 795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4,050천원 ※ 의무절감 10% ○ 청년네트워크 위원 활동비 4,050천원 · 실비(교통비 등) : 40.5천원 × 100명 = 4,050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기타보상금) : 2,500천원 ○ 정책연구활동 우수작 시상 : 2,500천원 · 시상금 : 300천원 × 5작 + 100천원 × 10작 = 2,500천원	
총사업비	30,035천원(도비 30,03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0,035		30,035	60,800	△30,765		
국 비							
도 비	30,035		30,035	60,800	△30,76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500	19,316	12,184	6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제의 場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5,000천원
- 사 업 량 :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1식, 청년 및 도민 1,000명 이상 참여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용역)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개막식, 주제행사, 부스행사, 문화행사, 명사초청특강 및 청년정책 포럼 등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7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45,000천원 ※ 의무절감 10% ○ 청년의 날 행사(행사운영비) : 45,000천원 · 행사장 임차비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행사지원 인력 : 10천원 × 10시간 × 50명 = 5,000천원 · 구조물(트러스트) 설치 : 200천원 × 75개 = 15,000천원 · 사회자 및 축하공연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이벤트관(취업증명사진, 커피트럭, AI면접 체험 존 등)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 음향 및 대형 LED 스크린(200인치)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온라인 촬영장비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내부 현수막 및 배너 : 60천원 × 75개 = 4,500천원 · 현수막(소형/대형 등) : 700천원 × 1식 = 700천원 · 행사 기본품목 대여 : 12천원 × 300개 = 3,600천원 · 행사 브로슈어(행사안내 및 정책안내 등) : 2천원 × 1,600부 = 3,200천원	
총사업비	45,000천원(도비 4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5,000		45,000		45,000		신규(2회추경)
국 비							
도 비	45,000		45,000		4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과의 소통·공감채널(대상·주제·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현장감 있는 청년의견 수렴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7,200천원
- 사 업 량 : 청년 소통공감 간담회 2식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분야별·직능별 청년과의 소통·공감 간담회(정책 토론회 및 제안) 개최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2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 7,200천원 ※ 의무절감 10%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지역 청년 등) : 7,200천원 · 행사장 임차비 : 800천원 × 2식 = 1,600천원 · 행사지원 인력 : 10천원 × 5시간 × 3명 × 2식 = 300천원 ·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150천원 × 5명 × 2식 = 1,5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퍼실리테이터, 1시간 교육) · 행사스케치 제작비: 300천원 × 2식 = 600천원 · 음향설치비 등: 600천원 × 2식 = 1,200천원 · 행사 포토월(배너포함) : 500천원 × 2식 = 1,000천원 · 소형 현수막 및 배너 : 30천원 × 5개 × 2식 = 300천원 · 인포그래픽 및 웹자보 제작비 : 400천원 · 다과비: 3천원 × 50명 × 2식 = 300천원	
총사업비	7,200천원(도비 7,2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200		7,200		7,200		신규(2회추경)
국 비							
도 비	7,200		7,200		7,2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포상금 (3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유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기획·추진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 업 량 : 청년친화정책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1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15개 시군 청년정책 추진 실적을 분야별 정량·정성부분 성과평가 실시(외부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평가 지표 개발 및 심사)하여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상위 1개 시군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26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13조 제7호 나목

청년기본법 제26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지역유입·정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 20,000천원 ○ 청년친화정책 추진 우수기관(1개 시군) 포상 : 20,000천원	
총사업비	20,000천원(도비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		20,000		20,000		신규
국 비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안연순 (행) 2290	이상의 (행) 3981	이예람 (행) 3992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정책사업	미리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이자보전금 (307-08)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65,000천원**
- 사 업 량 : 약500명 지원(대출한도 5천만원, 이차보전 3%)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방식(3.5%)
 - 2021년 신규 선정자 150여명(연226,700천원), 2020년 기 선정자 2차년도 194명(연226,000천원), 2019년 기 선정자 연장 143명(연167,3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주택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일부 이차보전(3%)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 465,000천원('21년 1~3분기 분, 4분기 분 별도 편성 필요) [산출근거] * '20년 3분기 정산 결과 기준 - 이차보전 : 50,000천원(상한) × 3% = 1,500천원 - 3분기 분(1~9월) 이차보전 : 375천원 × 3 = 1,125천원 ○ 2021년 신규 선정자 대상(예상) : 170,025천원 (연226,700천원) · 170,025천원 ÷ 1,125천원 = 151명 → 최소 151명 이상 지원 가능 ○ 2020년 기 선정자 대상(2차년도) : 169,500천원 (연226,000천원), 194명 분기당 56,500천원 · 이차보전 : 56,500천원 × 3분기 = 169,500천원(실지원금액) ○ 2019년 기 선정자 대상(연장) : 125,475천원 (연167,300천원), 143명(분기당 41,825천원) · 이차보전 : 41,825천원 × 3분기 = 125,475천원(실지원금액) ※ 대출금 중도상환 및 '20년 사업 대상 선정자 대출 시행 여부에 따라 금액 변동 있을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 협약 대출금리 3.5% 중 3% 지원(청년 자부담 0.5%) * 상기 내용은 연 단위 산출 결과이며, '21 본예산은 3분기(1월~9월) 분의 예산액 반영 결과임 → 4분기(10월~12월)분 정산 내역이 익년 1월에 산출되므로, 추후 '22년 예산 편성 필요 (예산실 심의 결과 반영)	
총사업비	465,000천원(도비 46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65,000		465,000	400,000	65,000		
국 비							
도 비	465,000		465,000	400,000	6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16,830	-	8.4%	183,170	2019년 사업대상자 1차년도 이자지원금 (분기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시 삶의 회의감과 취업에 지친 청년들을 충남으로 유입· 정착시켜 지역 인재로 육성,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창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5,900천원
- 사 업 량 :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3개 시군, 청년 75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공모선정)
- 사업 내용 : 충남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중인 충남 외 지역 청년에게 2~4주 동안 주거·생활 공간과 지역교류활동, 일자리체험 등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제공
- * 갭이어 : 학업(직장)을 잠시 중단하고 각종 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를 (재)설정하는 기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13조 제7호 가목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지역유입·정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153,800천원 ※ 의무절감 15% ○ 운영비 : 70천원 × 25명 × 25일(평균) × 3개시군 = 131,250천원 ※ 숙박비, 생활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인 1일 지원 한도 : 70천원 ○ 사업관리비 : 7,250천원 × 3개시군 = 21,750천원 ※ 홍보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총사업비 20% 이내 조정	
총사업비	153,000천원(도비 45,900천원 시군비 107,1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53,000		153,000		153,000		신규
국 비							
도 비	45,900		45,900		45,900		
시군비	107,100		107,100		107,1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안연순 (행) 2290	이상의 (행) 3981	이예람 (행) 3992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의 지역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인구 지역정착 및 도내 유입 촉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76,500천원
- 사 업 량 : 청년학교 10개소(시군별 1개소), 청년커뮤니티 50팀(시군별 5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민간단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공모선정)
 - ※ 공모과정: 민간단체 등 응모 → 시군(1차 심사) → 도(2차 심사, 최종 선정)
- 사업 내용 : 현장 중심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영 및 청년 커뮤니티(동아리)의 실험적 활동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2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 255,000천원(도비 76,500, 시군비 178,500) ※ 의무절감 15% ○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영 : 127,500천원(12,750천원 × 10개 시군) · 외부강사료 : 230천원 × 2명 × 6회 × 10개 시군 = 27,600천원 · 외부강사 여비 : 20천원 × 6회 × 10개 시군 = 1,2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교통여비 20천원) · 교육자료 제작 : 15천원 × 45명 × 6회 × 10개 시군 = 40,5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4천원 × 45명 × 6회 × 10개 시군 = 10,800천원 · 임차료 : 550천원 × 6회 × 10개 시군 = 33,000천원 · 홍보비 : 240천원 × 6회 × 10개 시군 = 14,400천원 ○ 청년 커뮤니티(동아리) 지원 : 127,500천원(12,750천원 × 10개 시군) · 510천원 × 5명 × 5팀 × 10개 시군 = 127,500천원	
총사업비	255,000천원(도비 76,500, 시군비 17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5,000		255,000	360,000	△105,000		
국 비							
도 비	76,500		76,500	180,000	△103,500		
시군비	178,500		178,500	180,000	△1,5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0	1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지역사회 청년세어하우스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지역 정착 초기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형성 기회 보장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5,500천원
- 사 업 량 : 1개 시군, 7개소 / 1개소 당 3명 청년 모집)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공모선정)
- 사업 내용 : 기존 건물 임대 후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재임대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4호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사회 청년세어하우스 운영 : 85,000천원 (도비 25,500천원, 시군비 59,500천원) ※ 의무절감 15% ○ 임대료 : 7,800천원 × 7개소 × 1개 시군 = 54,600천원 - 1개소당 임대료 : 650천원 × 12개월 = 7,800천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 100천원 × 7개소 × 1개 시군 = 700천원 ○ 집기구입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2,000천원 × 7개소 × 1개 시군 = 14,000천원 ○ 열화상 카메라 등 열감지 시스템 : 400천원 × 7개소 × 1개 시군 = 2,800천원 ○ 운영비(수선비, 기타 운영비 등) : 1,243천원 × 7개소 × 1개 시군 ≒ 8,700천원 ○ 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 600천원 × 7개소 × 1개 시군 = 4,200천원	
총사업비	85,000천원(도비 25,500, 시군비 59,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5,000		85,000	320,000	△235,000		
국 비							
도 비	25,500		25,500	160,000	△134,500		
시군비	59,500		59,500	160,000	△100,5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0,000	1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청년멘토를 육성하여 청년 관련 정보 및 제도를 제공하고,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70,000천원**
- 사 업 량 : 자율기획사업 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공모선정)
- 사업 내용 : 시군별 지역청년 멘토(활동가) 육성 및 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 : 567,000천원 ※ 의무절감 15% ○ 자율기획사업 운영 : 567,000천원 - 자율기획사업(한 달 살이 프로그램 등) : 40,000천원 × 5개 시군 × 2회 = 400,000천원 - 생태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 19,300원 × 5개 시군 = 96,500천원 - 외부강사료 및 여비지급 : 230천원 × 10회 × 5개 시군 = 11,5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2급, 2시간 기준) - 지역청년 멘토링(정기) 270천원 × 10회 × 4명(멘토) × 5개 시군 = 54,000천원 - 교육자료 제작 등 : 10천원 × 10부 × 10회 × 5개 시군 = 5,000천원	
총사업비	567,000천원(도비 170,000, 시군비 39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67,000		567,000	1,650,000	△1,083,000		
국 비							
도 비	170,000		170,000	825,000	△655,000		
시군비	397,000		397,000	825,000	△428,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옥 (행) 3995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및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 소통공간 마련
- 사업 위치 : 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76,500천원**
- 사 업 량 : 청년활력공간 LAB 조성(1개소) ※ LAB: Laboratory(실험실)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공모선정)
- 사업 내용 : 시군 공모를 통한 청년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 1개소 조성(1개 시군)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 : 255,000천원(도비 76,500천원, 시군비 178,500천원) ※ 의무절감 15% ○ LAB 리모델링 공사 : 212,000천원 × 1식 = 212,000천원 - 회의실, 세미나실, 문화 공간, 휴게실, 사무실, 공동부엌 등 ○ LAB 물품구입비 : 43,000천원 - 냉장고, 컴퓨터, 복사기, 팩스, 사무용 책상 등 : 43,000천원 × 1식 = 43,000천원	
총사업비	255,000천원(도비 76,500, 시군비 17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5,000		255,000	300,000	△45,000		
국 비							
도 비	76,500		76,500	150,000	△73,500		
시군비	178,500		178,500	150,000	28,5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0	1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에 활동할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5,000천원
- 사 업 량 : 청년공동체 10개 팀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공모선정)
- 사업 내용 :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지역 콘텐츠 제작, 타시군 네트워킹, 멘토자문료 등)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100,000천원 ○ 농촌체험플래너 자격과정비(강사료 및 발급비 등) : 200천원 × 60명 = 12,000천원 ○ 청년공동체 활동보고서 제작비 : 20천원 × 150개 = 3,000천원 ○ 청년공동체 활동비 (제품제작비, 멘토링, 홍보비 등) : 8,500천원 × 10팀 = 85,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15,000, 시군비 3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000		100,000		100,000		신규
국 비	50,000		50,000		50,000		
도 비	15,000		15,000		15,000		
시군비	35,000		35,000		35,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융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는 2017년 청년일자리팀 신설 이후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나, 그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이 없었고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설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계속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 운영 방법 개선 등을 모색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대상 수혜자 확대에 고용환경 개선
-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공모 사업에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구성·운영실적이 필수사항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7,65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실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및 적절성 평가 등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각호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7,650천원 ※ 의무절감 15% ○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참석자 수당 : 200천원 × 10명 × 3회 = 6,000천원 - 책자 등 인쇄 : 10천원 × 15부 × 3회 = 450천원 ○ 청년일자리 사업 담당자 회의 - 책자 등 인쇄 : 10천원 × 40부 × 1회 = 400천원 ○ 기타 운영비 : 800천원	
총사업비	7,650천원(도비 7,6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650		7,650	9,000	△1,350		
국 비							
도 비	7,650		7,650	9,000	△1,3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5,742	4,258	57.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5,000		85,000	100,000	△15,000		
국 비							
도 비	85,000		85,000	100,000	△1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임의성 (행) 2292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9,750천원
- 사 업 량 : 1개소(호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호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고용노동부 지정)
- 사업 내용 : 대학의 청년 일자리 시책 개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도내 대학일자리센터를 지원하여 산업계 수요와 대학의 인력공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강화, 취·창업 지원서비스 강화,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지원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 직업안전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 29,750천원(도비) ※ 의무절감 15% ○ 산학융합캠퍼스 맞춤 진로 및 취업캠프 : 9,000천원 · 특강 및 면접강사료 : 150천원 × 6명 × 4시간 × 2회 = 7,200천원 · 행사준비비(도시락, 현수막, 운영비) : 900천원 × 2회 = 1,800천원 ○ 지역대학 연합 중견기업 취업전략 발표 콘테스트 : 9,200천원 · 심사위원 및 사회자 : 150천원 × 4명 × 4시간 × 2회 = 4,800천원 · 행사진행(예선/본선) : 5천원 × 120명 = 600천원 · 상금(6팀) : 2,900천원 · 홍보 및 행사준비 : 900천원	

	○ 지역대학 연합 블라인드 모의공채 경진대회 : 11,550천원 · 심사비 : 150천원 × 8명 × 3시간 × 2일 = 7,200천원 · 인적성시험비(30명) : 1,000천원 · 다과 및 식대 : 10천원 × 80명 = 800천원 · 상금(6명) : 2,400천원 · 현수막 및 배너 : 150천원	
총사업비	29,750천원(도비 29,7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9,750		29,750	70,000	△40,250		신규(부서이관)
국 비							
도 비	29,750		29,750	70,000	△40,2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0	7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임의성 (행) 2292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청년과 우수 지역기업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기업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정보접근성 향상, 지역일자리 미스매치완화 및 지역인재 유출방지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68,000천원
- 사 업 량 : 40회(기업탐방 20회, 채용행사 20회)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특성화고교 및 대학생 대상, 도내 우수기업 탐방 및 교내 채용행사* 지원 등
* 채용행사 : 이력서 컨설팅, 면접스킬 교육, 전문가 취업특강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취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 68,000천원 ○ 사업 설명회 : 280천원 · 문구 및 다과 : 280천원 × 1식 = 280천원 ○ 기업탐방 지원 : 22,400천원 · 마이스터·특성화고 지원 : 11,200천원 - 교통비(버스, 기차) : 500천원 × 10회 = 5,000천원 - 단체상해보험 : 2.5천원 × 40명 × 10회 = 1,000천원 - 식비 : 13천원 × 40명 × 10회 = 5,200천원 · 대학 지원 : 11,200천원 - 교통비(버스, 기차) : 500천원 × 10회 = 5,000천원 - 단체상해보험 : 2.5천원 × 40명 × 10회 = 1,000천원 - 식비 : 13천원 × 40명 × 10회 = 5,200천원 ○ 취업행사지원 : 28,000천원 · 마이스터·특성화고 지원 : 1,000천원 × 10회 = 10,000천원 · 대학 지원 : 1,800천원 × 10회 = 18,000천원 ○ 도서인쇄비 : 5,600천원 · 운영성과보고 책자제작 : 14천원 × 400부 = 5,600천원 ○ 운영비 : 4,920천원	

	· 국내 여비 : 40천원×98회 = 3,920천원 · 사무관리비 : 100천원×10회 = 1,000천원 ○ 위탁 수수료(사업비의 10%) : 6,800천원	
총사업비	68,000천원(도비 6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8,000		68,000	68,000	0		
국 비							
도 비	68,000		68,000	68,000	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8,000	6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임의성 (행) 2292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인기업 및 구직자에게 온오프라인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450,000천원
- 사 업 량 :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100회 운영 / 일자리 취·창업 카페 6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찾아가는 취·창업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각호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 450,000천원 ○ 충남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비 = 180,000천원 · 인건비(상당사 1, 버스기사 1) : 40,000천원 × 2명 = 80,0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10회 × 2명 × 10개월 = 10,000천원 · 버스 관리비 = 35,392천원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유지보수 비용, 유류비 등) · 버스 프로그램 운영 : 300천원 × 60회 = 18,000천원 · 취업행사 운영 : 2,000천원 × 6회 = 12,000천원, 간담회 : 100천원 × 10회 = 1,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식 : 6,000천원, 홍보물품 제작 : 2,000천원 × 2식 = 4,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 인쇄물(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1식 : 6,408천원 · 버스 비치용 집기 : 2,000천원, 이동식 인터넷 설치 : 3,000천원, 소모품 등 : 2,200천원 ○ 충남 취·창업 카페 사업비 = 225,000천원 · 인건비(상당사 1) : 40,000천원 × 1명 = 40,0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10회 × 1명 × 10개월 = 5,000천원 · 업무추진비 : 200천원 × 10회 = 2,000천원 · 취창업 특강 및 행사 : 840천원 × 50회 = 42,000천원 · 동아리 지원 : 1,000천원 × 110팀 = 110,000천원 · 시설지원 및 장비 구입 : 4,080천원 × 5개소 = 20,400천원 · 온·오프라인 이벤트비 : 5천원 × 360명 × 2회 = 3,600천원 · 홍보 인쇄물(리플릿, 포스터) : 1,000천원 × 2식 = 2,000천원 ○ 위탁수수료(총 사업비의 10%) = 45,000천원	
총사업비	450,000천원(도비 4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50,000		450,000		450,000		신규(부서이관)
국 비							
도 비	450,000		450,000		4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설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기업·기관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 고용환경 개선코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2021년까지 추진 계획
- 예 산 액 : **16,374,835천원**
- 사 업 량 : 63개 사업(계속사업 51 + 신규사업 12), 1,060명 고용창출
- 사업시행방법 : 사업유형 제시(행안부) → 지자체 자율적 사업설계 → 행안부 공모·심사 → 국비지원 → 사업시행(시군)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 지원비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및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3,432,829천원 ○ 15개 시군, 63개 사업, 1,060명 고용창출 : 23,432,829천원 (국비 11,498,199 도비 4,876,636 시군비 4,876,637 기업부담 2,181,357) · 계속사업 : 51개 사업 575명 고용창출 = 13,664,579천원 (국비 6,750,599 도비 2,792,686 시군비 2,792,688 기업부담 1,328,606) · 신규사업 : 12개 사업, 485명 고용창출 = 9,768,250천원 (국비 4,747,600 도비 2,083,950 시군비 2,083,949 기업부담 852,751) * 천안2, 보령1, 논산1, 당진4, 금산1, 청양1, 홍성1, 예산1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확정	행정안전부 가내시 지역 '20년 본예산 수준 편성, '21년 추경 증액 필요
총사업비	23,432,829천원(국비 11,498,199, 도비 4,876,636, 시군비 4,876,637, 기타 2,181,35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3,432,829		23,432,829	23,432,829	0		
국 비	11,498,199		11,498,199	11,498,199	0		국고
도 비	4,876,636		4,876,636	4,876,636	0		
시군비	4,876,637		4,876,637	4,876,637	0		
기 타	2,181,357		2,181,357	2,181,357	0		기업부담

* 보조율 : (1유형)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2유형)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3유형) 국비 40%, 도비 25%, 시군비 25%,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4유형)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432,050	9,432,05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융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대학 우수인재의 직접적인 채용지원을 통한 고용활성화 및 지역정착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660,310천원**
- 사 업 량 : 21명(기존인원 11명 + 신규인원 10명 일자리 창출)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2+1년*) 창출 지원
* 2+1년 : 월 200만원 기업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1년, 청년인센티브 1,000만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704,710천원(국비 243,855, 도비 416,455, 기업부담 44,400)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444,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11명(기존인원) × 12개월 = 264,000천원 · 2,000천원 × 10명(신규인원) × 9개월 = 180,000천원 ○ 기타지원금(사업운영비 등) : 43,71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710천원 ○ 자율지원비 : 217,000천원 ※ 도비 100% · 수습운영비 : 2,100천원 × 10명 × 1회 = 21,0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100천원 × 8회 = 800천원 · 운영비(간담회) : 800천원 × 3회 = 2,400천원 · 운영비(홍보비)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행정안전부 가내시 지원 '20년 본예산 수준 편성, '21년 추경 증액 필요

산출 기초	· 여비 : (40천원 × 월 5회) × 12개월 × 1명 = 2,400천원 · 기본교육 운영비 : 1,000천원 × 1회 = 1,000천원 · 집합교육 운영비 : 24,000천원 × 1회 = 24,000천원 ·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1,000천원 × 21명 = 21,000천원 · 정주여건 개선비 : 364,703원(교통비, 복지포인트 등) × 21명 × 9개월 ÷ 68,929천원 · 위수탁수수료 : 704,710천원 × 10% = 70,471천원	
총사업비	704,710천원(국비 243,855, 도비 416,455, 기업부담 44,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04,710		704,710	704,710	0		
국 비	243,855		243,855	243,855	0		국고
도 비	416,455		416,455	416,455	0		
시군비							
기 타	44,400		44,400	44,400	0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34.6%, 도비 59.0%, 기타 6.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8,800	148,8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임의성 (행) 2292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교생 대상 지속가능한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1,973,712천원
- 사 업 량 : 76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특성화고 졸업생(예정자)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2+1년*) 창출 지원
* 2+1년 : 월 200만원 기업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1년, 청년인센티브 1,000만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 2,156,112천원 : 2,156,112천원(국비 1,028,056, 도비 945,656, 기업부담 182,400)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1,824,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76명 × 최대 12개월 = 1,824,000천원 ○ 기타지원금(사업운영비 등) : 232,112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200천원 · 기본교육 운영비 : 7,184,160원 × 1회 = 7,184,160원 · 집합교육 운영비 : 10,000천원 × 1회 = 10,0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130천원 × 10회 = 1,300천원 · 운영비(간담회) : 1,000천원 × 4회 = 4,000천원 · 운영비(홍보비) :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업무추진비 : 310천원 × 10회 = 3,100천원 · 여비 : (40천원 × 월 5회) × 12개월 × 1명 = 2,400천원 · 위수탁수수료 : 2,156,112천원 × 7% = 150,927,840원	행정안전부 가내시 지역 '20년 본예산 수준 편성, '21년 추경 증액 필요

산출 기초	○ 자율지원비 : 100,000천원 ※ 도비 100% · 교통비 : 50천원 × 76명 × 12회 = 45,600천원 ·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 100천원 × 76명 × 2회 = 15,200천원 · 추가교육 운영비 : 39,200천원 × 1회 = 39,200천원	
총사업비	2,156,112천원(국비 1,028,056, 도비 945,656, 기업부담 182,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156,112		2,156,112	2,156,112	0		
국 비	1,028,056		1,028,056	1,028,056	0		국고
도 비	945,656		945,656	945,656	0		
시군비							
기 타	182,400		182,400	182,400	0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48.2%, 도비 43.2%, 기타 8.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8,000	45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임의성 (행) 2292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경영 기반 안정화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 후 3년 이내 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업)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863,928천원**
- 사 업 량 : 121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테크노파크
- 사업 내용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월 200만원 최대 2년간), 신규직원 워크숍 및 교육·컨설팅 지원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및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 3,142,328천원 * 국비 1,571,164천원, 도비 1,292,764천원, 기업부담 278,400천원 ○ 인건비 : 2,784,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19년 지원인원 인건비 2,000천원 × 91명 × 12개월 = 2,184,000천원 · 2020년 신규인원 인건비 2,000천원 × 30명 × 10개월 = 600,000천원 ○ 기타지원금 : 358,328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9,000천원 × 12개월 = 108,000천원 · 신규 선발인원 대상 기본교육 : 20,000천원 × 1회=20,000천원 · 채용인원 대상 워크숍 : 15,000천원 × 3회 = 45,000천원 · 수혜기업 CEO 리더쉽 워크숍 : 15,000천원 × 1회 = 15,000천원 · 심화교육 : 4,500천원 × 5회(1회당 24명씩) = 22,500천원 · 지원 채용인원 자기개발지원 = 1,000천원 × 121명 = 121,000천원 · 유관기관 네트워킹 : 1,100천원 × 5회 = 5,500천원 · 관리운영비(소모품구입, 회의비, 여비교통비 등) : 21,328천원	행정안전부 가내시 지원 '20년 본예산 수준 편성, '21년 추경 증액 필요
총사업비	3,142,328천원(국비 1,571,164, 도비 1,292,764, 기업부담 278,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142,328		3,142,328	3,142,328	0		
국 비	1,571,164		1,571,164	1,571,164	0		국고
도 비	1,292,764		1,292,764	1,292,764	0		
시군비				0	0		
기 타	278,400		278,400	278,400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41%, 기타(기업부담) 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63,000	1,763,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융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활력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880,000천원**
- 사 업 량 : 200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지역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2+1년*) 창출 지원
* 2+1년 : 월 200만원 기업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1년, 청년인센티브 1,000만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 4,240,000천원 : 4,240,000천원(국비 2,025,000, 도비 1,855,000, 기업부담 360,000)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3,600,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200명('20년 신규인원) × 9개월 = 3,600,000천원 ○ 기타지원금(사업운영비 등) : 450,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200천원 · 여비 : (40천원 × 월 5회) × 12개월 × 1명 = 2,400천원 · 교통비 지원 : 50천원 × 200명 × 9개월 = 90,000천원 · 운영비(간담회) : 500천원 × 8회 = 4,000천원 · 운영비(홍보비) :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160천원 × 10회 = 1,600천원 · 위수탁수수료 : 4,240,000천원 × 7% = 296,800천원	행정안전부 가내시 지원 '20년 본예산 수준 편성, '21년 추경 증액 필요

산출 기초	○ 자율지원비 : 190,000천원 ※ 도비 100% · 기본교육 운영비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 집합교육 운영비 : 50,000천원 × 1회 = 50,000천원 ·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지원 : 600천원 × 200명 = 120,000천원	
총사업비	4,240,000천원(국비 2,025,000, 도비 1,855,000, 기업부담 3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240,000		4,240,000	4,240,000	0		
국 비	2,025,000		2,025,000	2,025,000	0		국고
도 비	1,855,000		1,855,000	1,855,000	0		
시군비							
기 타	360,000		360,000	360,000	0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47.7%, 도비 43.7%, 기타 8.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임의성 (행) 2292

〈 특별회계 〉

균형 발전 특별회계

목 차

1.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259
-------------------------------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균특)
	세부사업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창출과 연대감 증진 지역공동체, 상권활성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분야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5.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3,000천원
- 사 업 량 : 직거래플랫폼 등 경제생태계 구축 1식, 마을만들기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지역화폐 활용 경제생태계 구축, 마을공동체를 통한 마을재생, 골목상권 활성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 1,206,000천원(도비 603,000, 시군비 603,000) ○ 공동체화폐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직거래플랫폼 구축 등) : 310,000천원 ○ 여행을 통한 사람 연결 (관광객 대상 택시 네트워크 등 여행-골목상권 연계 프로그램) : 40,000천원 ○ 공동체를 통한 마을재생(청년게스트하우스 등) : 406,000천원 ○ 골목재생(시인 문학거리 조성 등) : 50,000천원 ○ 상인조직 자율희망사업(창업 인큐베이팅, 공동마케팅 등) : 400,000천원	
총사업비	1,206,000천원(도비 603,000, 시군비 60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06,000		1,206,000		1,206,000		신규
국 비							
도 비	603,000		603,000	-	603,000		
시군비	603,000		603,000	-	603,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진행 중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용민 (행) 3474